R&BD사업기획 역량 강화

지식재산전략 수립

2021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C O N T E N T S

01 지식재산권의 이해

1. 지식재산권 개요
2. R&BD사업과 지식재산권
3. 특허 이해
4. 발명 이해

02 선행특허조사와 특허 창출

1. 특허정보 개요
2. 선행기술조사 개요
3.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4. 선행특허조사 실습
5. R&BD사업과 특허창출 전략

지식재산전략 수립

01 지식재산권의 이해

1. 지식재산권 개요
2. R&BD사업과 지식재산권
3. 특허 이해
4. 발명 이해

제 1절 지식재산권 개요

1.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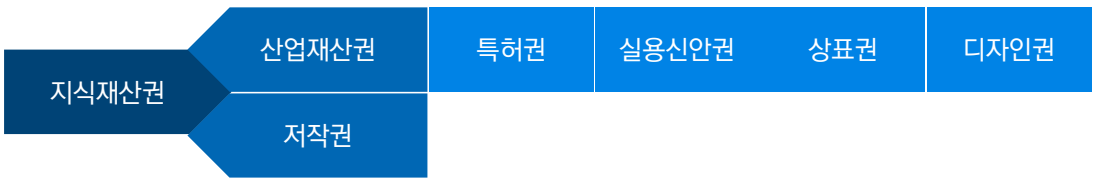

1474년 베니스 공화국 (근대적 의미의 특허제도)
베니스 공화국의 특허법은 발명의 실용성과 신규성을 특허권허여의 전제로 하여 10년간 특허권을 인정

1624년 영국의 전매조례
최초의 성문화된 특허법

1790년 미국 특허법 제정

1883년 파리조약 : 최초의 지적소유권 국제협약

1930년
- 미국산업의 비약적 발전
- 경쟁체계를 통한 기술력 강화

→ Anti Trust / 특허약화

일본 : 미국기본기술 도입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기술계량촉진)

1980년
- 미국산업 쇠퇴로 대외경쟁력 약화
- 정보화 사회 도래로 제품 및 기술의 복제가 용이
- 시장의 Globalization 화에 따른 경쟁 치열
- 회사의 존립을 위한 제품, 기술 등 다방면의 경쟁력 확보추세

1990년
- 반도체 등 Hi-Tech 산업은 국가의 기간 산업임

→
- Anti Trust 경시 / 특허약화
-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 신 지적소유권의 창출

▼

- Pro-Patent 시대

2000년
- Patent Troll(NPE) 등장

→ 특허분쟁 심화

2. 지식재산의 중요성

산업 기반이 정보와 지식으로 이동해 가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아이디어와 혁신과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 성장의 기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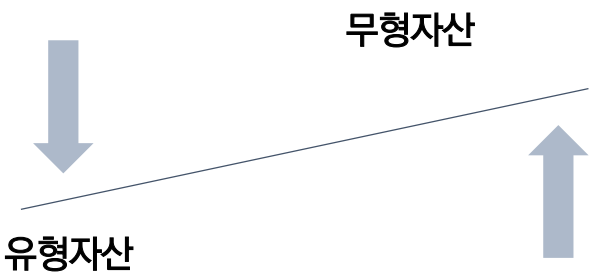

21세기 기업의 생존 전략은 지식재산권의 확보에 있으며,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은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특허관리 조직과 특허전략을 갖고 있다

성공적인 특허전략을 통한 유익
-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 - 경쟁력를 강화 - 기업 가치를 상승 - 지식재산의 라이선싱을 통한 새로운 수입원 확보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 특허정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새 집을 구입한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것과 같다."

(IPR Bulletin 2002. 10.)

"사업을 하기 전에 특허를 생각하고, R&D 투자를 하기 전에 또 특허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빗 링구아 유럽특허청 지식재산권 담당과장)

"나는 연구자들에게 아카데믹한 논문보다 특허명세서를 많이 읽고, 특허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격려한다. 이를 통해 특허에 강한 몇몇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후지오 미타라이 캐논 CEO)

3. R&BD와 지식재산

[R&D와 특허제도의 상관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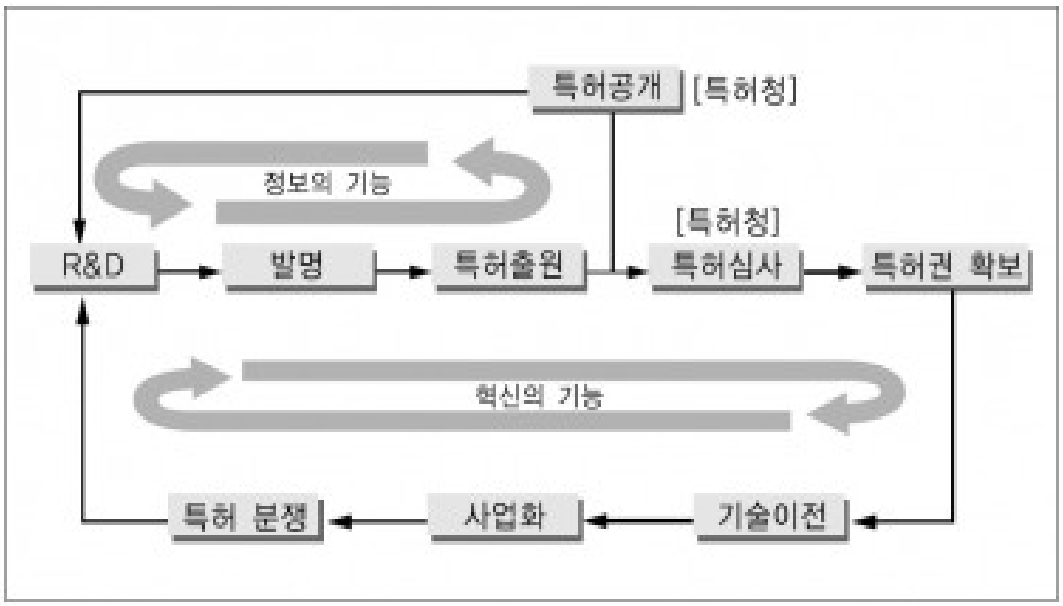

4. R&D에서 지식재산활용

R&D 활동에 있어서 지식재산은 기본적으로 연구과제도출, 사업화 방향 설정, 효율적 기술개발 지원 및 생산성 향상 등 R&D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식재산은 R&D 기획단계부터 완료 및 사업화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1) R&D 단계별 활용

- R&D 기획단계

① 연구개발사업기획(공공부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연구사업 착수 이전에 연구사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수행 방법을 검토하며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
※ 기획대상 조사 → 연구기획 수립 → 연구기획 실시 → 연구기획 확정

②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기획(민간부문) :
기술기획, 상품기획, 프로젝트 기획 등을 포함하며, 실행력 있는 기술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상품 개발과 관련 기술의 향상이 요구

③ 최근에는 특허정보조사 결과를 체계화한 특허맵이 R&D 기획에 활용되고 있다.

- R&D 수행단계

R&D와 관련된 문제특허를 추출하여 R&D의 중복여부를 검증하고, R&D의 방향의 수정 여부를 검토한다.

- R&D 완료단계

R&D 결과물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특허보강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R&D 결과물의 권리화 여부도 재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2) 日立 PAS 제도

PAS(Patent Strategy)제도는 연구개발활동을 특허 전략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수법으로 타사의 기술동향과 시장의 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인 특허망을 구축하는데 활용된다.

PAS는 다음의 경우 활용된다.

- 고객의 Needs을 파악하고 타사에 선행하여 출원하여 침해적발을 용이토록 하는 경우
- 제품 계획 수립이 늦었기 때문에 Cross-License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특허의 취득을 계획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 제품에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타사도 동일한 문제와 조우할 것으로 생각되어 모든 해결책을 급속히 출원코자 하는 경우

3) 東志 Patent Review

상품기획에서 개발, 생산, 판매까지의 전 Flow를 특허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관련 분야의 타사권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도표화한 것을 사업내지는 시장 전략화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예시

S사 PM활용전략

특허인증 기법

<table>
<tr><th>연구개발단계</th><th colspan="2">특허 프로세스</th><th>역할</th></tr>
<tr><td>상품기획</td><td colspan="2">- 특허조사 및 분석으로 특허MAP 작성
- 특허정보에 의한 상품 사양 결정
- 사양에 따른 문제특허 추출
- 상품 컨셉 등 아이디어성 특허출원</td><td>특허부서
R&D부서</td></tr>
<tr><td>PROTO 단계</td><td>- 완성제품과 동일한 특허출원</td><td rowspan="2">제품과 특허의 일체화 작업</td><td>특허부서
R&D부서</td></tr>
<tr><td>DVT 단계</td><td>-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청구범위 강화 작업</td><td>특허부서</td></tr>
<tr><td>출하 단계</td><td colspan="2">- 해외출원 진행</td><td>특허부서</td></tr>
</table>

※ 상품기획 혹은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경영자, 연구원, 특허부서 담당자, 변리사가 공동의 참여와 활동으로 전략적 유효특허 확보

제 2절 R&BD사업과 지식재산권

1. R&D 결과물 및 지식재산의 사업화

R&D 결과물 및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필요 자금의 수요 예측 및 확보가 요구되며, 시장의 요구를 고려한 최적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하여야 한다.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 (출처 : Charles W. Wessener(2005))]

2. 기술사업화 절차와 지식재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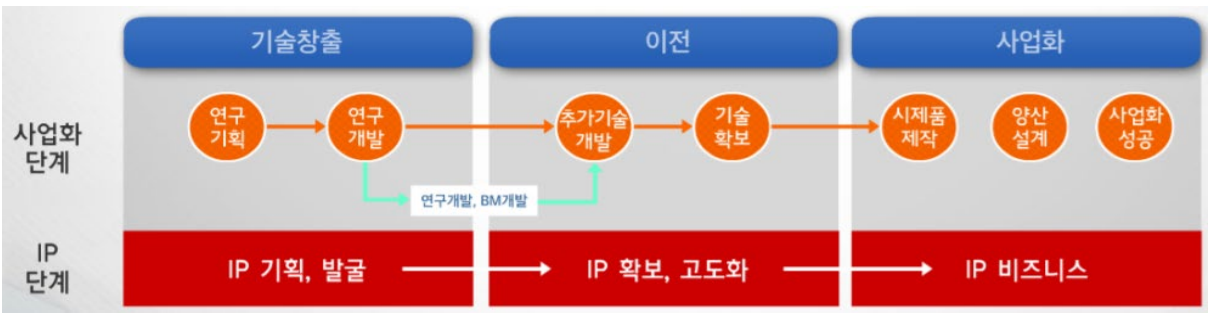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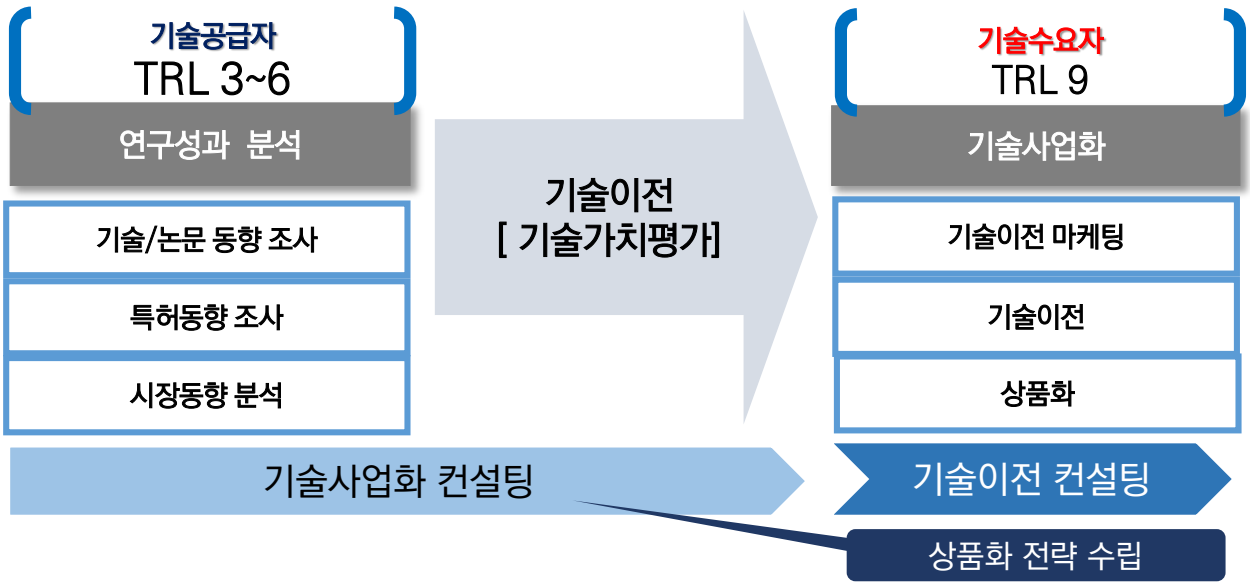
기술공급자
TRL 3~6
연구성과 분석
기술/논문 동향 조사
특허동향 조사
시장동향 분석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
기술수요자
TRL 9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마케팅
기술이전
상품화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술이전 컨설팅
상품화 전략 수립

3. 사업성 평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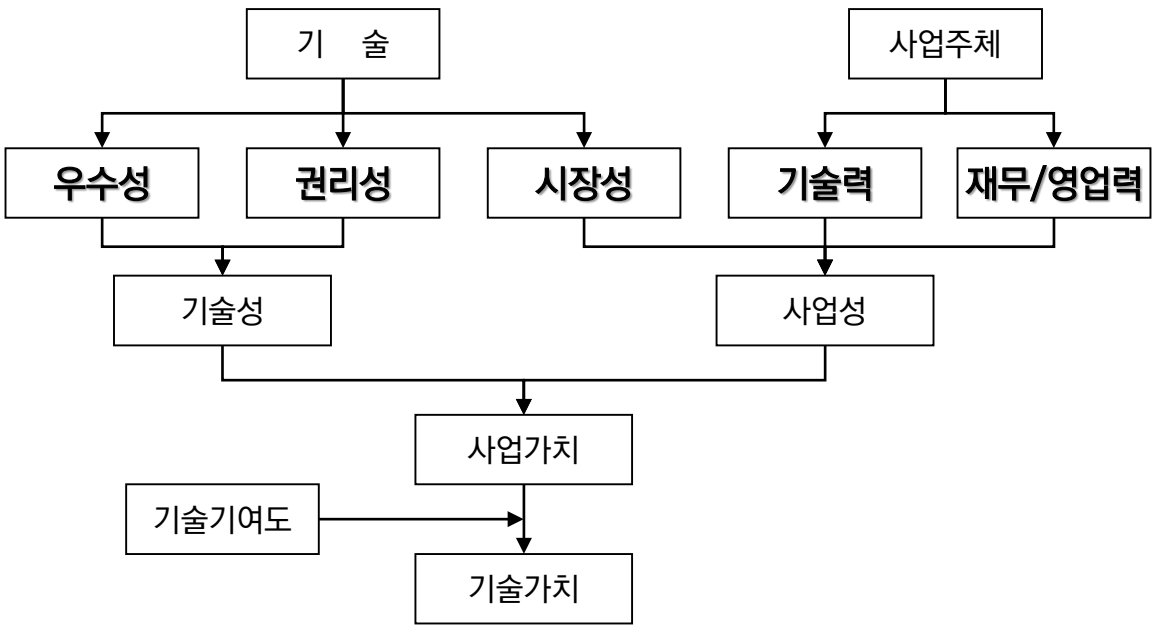
기 술
사업주체
우수성
권리성
시장성
기술력
재무/영업력
기술성
사업성
사업가치
기술기여도
기술가치

4. 사업성 평가 항목

기술성 분석	기술개요(기술의 정의 및 개요)
	기술개발동향 및 경쟁(신규대체) 기술현황
	경쟁기술 대비 기술수준(우위성, 첨단성, 독창성 등)
	기술권리분석
	기술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등
시장성 분석	시장개요(시장의 정의 및 특징)
	시장진입장벽 및 국내외 시장규모
	동업종 및 관련업종 성장전망
	국내외 시장동향 및 시장점유율
	경쟁업체 현황 및 기타 법적규제 등 환경분석
사업(수익)성 분석	제품경쟁력(가격 및 품질)
	수익성분석(매출, 원가분석 등) 및 사업화추진 타당성
	제품화능력(생산, 마케팅 등)
	경영자 의지 및 능력 판단
	시장진입시기 등

5. 기술가치 평가와 지식재산권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점(예)
기술성	혁신성	3
	기술적우월성	3
	차별성	4
	경쟁성(유사경쟁 기술존재(수))	4
	대체성(대체기술의 출현가능성)	2
	모방용이성	3
	권리범위	4
	권리의 안정성	3
	활용성	3
	전망성	3
	파급성	3
	기술수명	3
합계		38

구분	평가항목	평점(예)
시장성	시장집중도(주도기업의 존재)	4
	시장경쟁성	3
	시장경쟁의변화	3
	시장성장성	3
	신제품출현빈도	5
	상용화요구시간	3
	상용화소요자본	4
	생산용이성	5
	경제적수명	3
	수요성	2
	시장진입 가능성	2
	예상시장점유율	2
	매출성장성	3
	영업이익성(수익성)	3
	파생적매출	1
합계		46

※ 참조: 기술보증기금, 기술가치평가기준, 2014. 4

제 3절 특허 이해

1. 연구개발과 특허

연구개발의 각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개발된 결과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알아본다.

1) 연구개발 과제 선정

연구개발에 착수하기에 앞서, 연구의 주제와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이때 개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해당 연구 분야의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시장의 요구를 분석하여 연구개발의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맵*을 작성함으로써 과제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 특허정보조사분석(특허맵) :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연구방향 설정을 올바로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연구개발의 활용도 제고의 결정적인 요소

2) 연구개발 절차 기획

연구개발 과제가 선정되면, 선정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이 요구된다. 이때 과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단계적 목표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구 분야의 선행기술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허문헌 - 기술문헌으로서 특허문헌을 참고하여 연구개발 과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연구 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적 과제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특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권리서로서 특허문헌을 참고할 수도 있다.

3) 특허관리 매뉴얼 사용

연구실 단위의 특허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구실의 특허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참여 연구원에게 주기적으로 특허관리 매뉴얼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4) 비밀 유지

비밀정보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연구기관차원에서 '비밀정보관리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누적된 지식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영업비밀 요건충족을 위한 문서관리'가 필요하다.

5) 연구노트

6) 특허출원 검토

연구개발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과제의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 단계별 지식들도 연구개발 결과와 별개의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각 단계에서 얻어진 지식들 각각에 대하여 특허출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할 사항

- 발명이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새롭고 진보된 것인지 여부를 개략적으로 평가
- 대상 발명에 대한 사업적 평가
- 발명의 내용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여부를 검토
- 타인의 발명 실시 가능성과 라이선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본 원리

기본원칙	대립개념	내용
권리주의	은혜주의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특허요건을 구비한 발명의 특허를 재량으로 거부하지 못한다.
심사주의	무심사주의	특허청이 형식적, 실체적 특허요건을 심사한 후에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최선 발명자가 아니라 최선 출원인에게 특허를 인정한다.
등록주의	발명주의	특허권의 발생은 설정등록에 의하고,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특허요건

1) 주체적 요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에 기재된 발명자가 실질적으로 발명을 완성한 자이어야 하고, 특허출원에 기재된 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2) 객체적 요건

발명은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절차적 요건

특허출원의 형식이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특허명세서 구조

구성	주요기능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호의 설명】	기술문서 발명의 특허성(신규성, 진보성)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해설서
【특허청구범위】 　【청구항1】	권리문서 보호범위적 기능 구성요건적 기능
【요약서】	서지 기능 출원의 분류, 정리, 검색 등에 이용
【도면】	필요한 경우에 한함

5.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1)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한다.

2) 심사청구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특허출원 후 언제라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취하로 간주한다.

3) 출원공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공개한다.

4) 실체심사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심사한다.

5) 설정등록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한다.

6) 등록공고

특허청은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한다.

7) 거절결정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거절결정할 수 있다.

8)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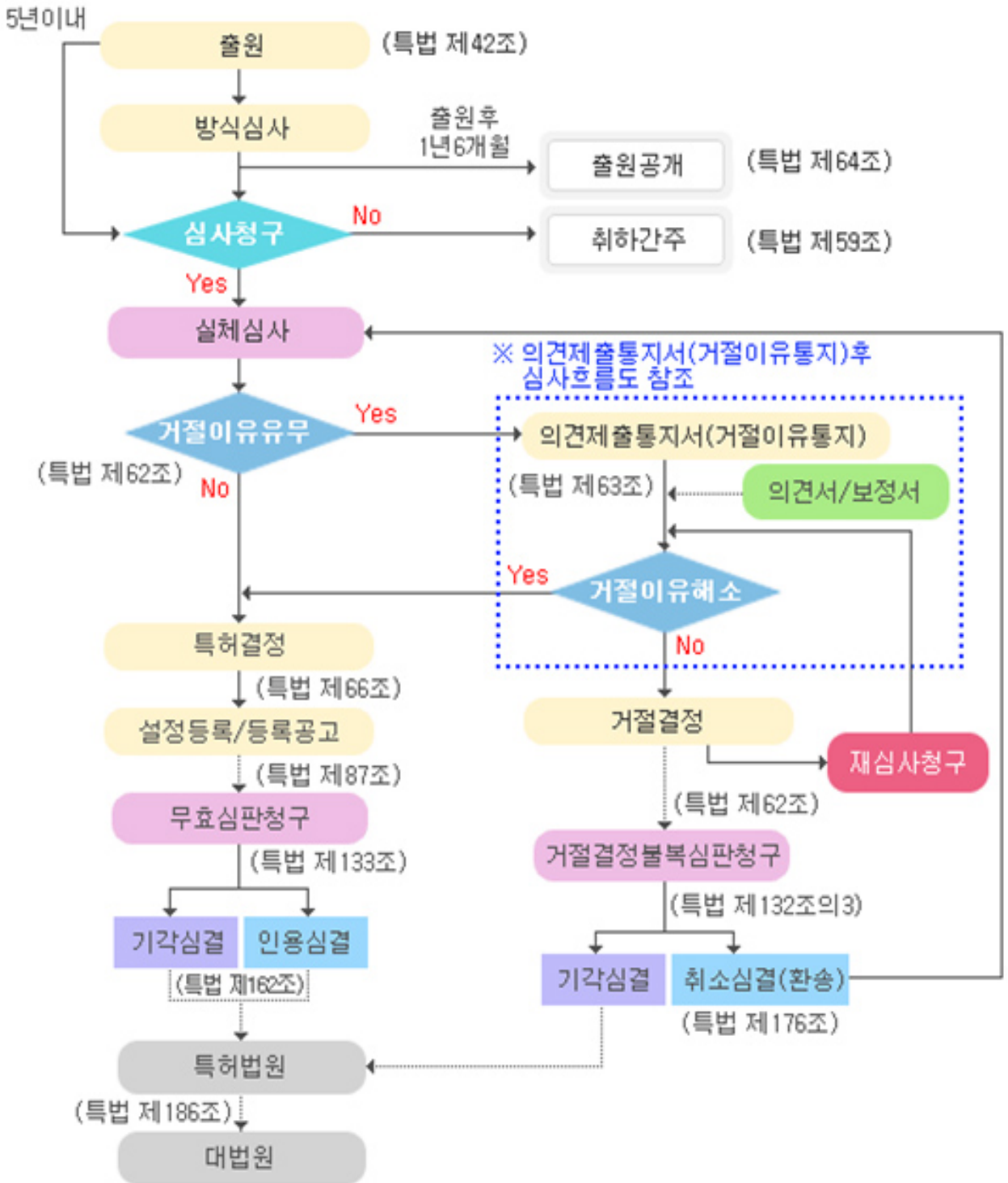
5년이내
출원
(특법 제42조)
방식심사
출원후
1년6개월
출원공개
(특법 제64조)
심사청구
No
취하간주
(특법 제59조)
Yes
실체심사
※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후
심사흐름도 참조
거절이유유무
Yes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
(특법 제62조)
No
(특법 제63조)
의견서/보정서
Yes
거절이유해소
No
특허결정
(특법 제66조)
거절결정
설정등록/등록공고
재심사청구
(특법 제87조)
(특법 제62조)
무효심판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특법 제133조)
(특법 제132조의3)
기각심결
인용심결
기각심결
취소심결(환송)
(특법 제162조)
(특법 제176조)
특허법원
(특법 제186조)
대법원

6. 특허심사 주요 제도

1) 우선심사제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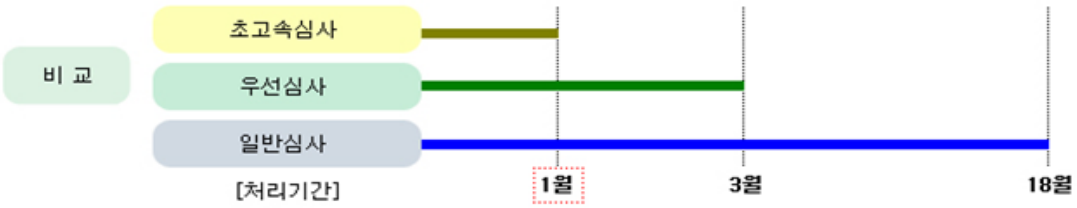

2) 청구범위제출유예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출원인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된다.

3) 심사유예신청

늦게 심사 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희망시점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4) 분할출원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5) 변경출원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다.

6) 조약우선권 주장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7) 국내우선권 주장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8) 직권보정

소정의 경우에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 직접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9) 재심사(심사전치)

심사 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7. 특허권의 효력

구분	내용
적극적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직접실시 뿐 아니라 자유롭게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소극적 효력	특허권은 배타적 금지권으로서, 제3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특허권의 침해에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직접침해)와 특허발명의 실시는 아니지만 직접침해의 개연성이 높아 침해로 간주하는 경우(간접침해)가 있다.

요건		내용
업으로서의 실시		업으로서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데, 널리 '사업적 의미'로서의 실시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시의 범위		발명을 그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특허법상의 실시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분류하여 규정된다.
실시의 형태	물건발명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을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방법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

-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 출원시의 기술수준 참작의 원칙
-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특허의 선순환 구조]

[실시권 설정]

분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내용	
	발생	약정실시권
		법정사용권
		강제실시권

예시

[특허 분쟁 사례 연구]

- 모토롤라(구글) vs 마이크로소프트/애플
- 엘지이노텍 vs 오스람

폴라로이드사 대 코닥사

•침해 제품 : 코닥사 인스턴트 카메라
•손배 배상액 : 약8억7,300만달러(1990년 9월13일 판결)
•기타 : 소비자 보상액 2억5천만달러~5억달러로 추정

Intertrust 사 대 Microsoft 사

•대상 기술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침해 제품 : MS사의 Window XP, Media Player 등
•화해 금액 : 4억4천만달러(2004년 4월12일 공지)
•분쟁 특허 : 미국등록특허 11건 대 MS사 2건

제 4절 발명 이해

1. 실용신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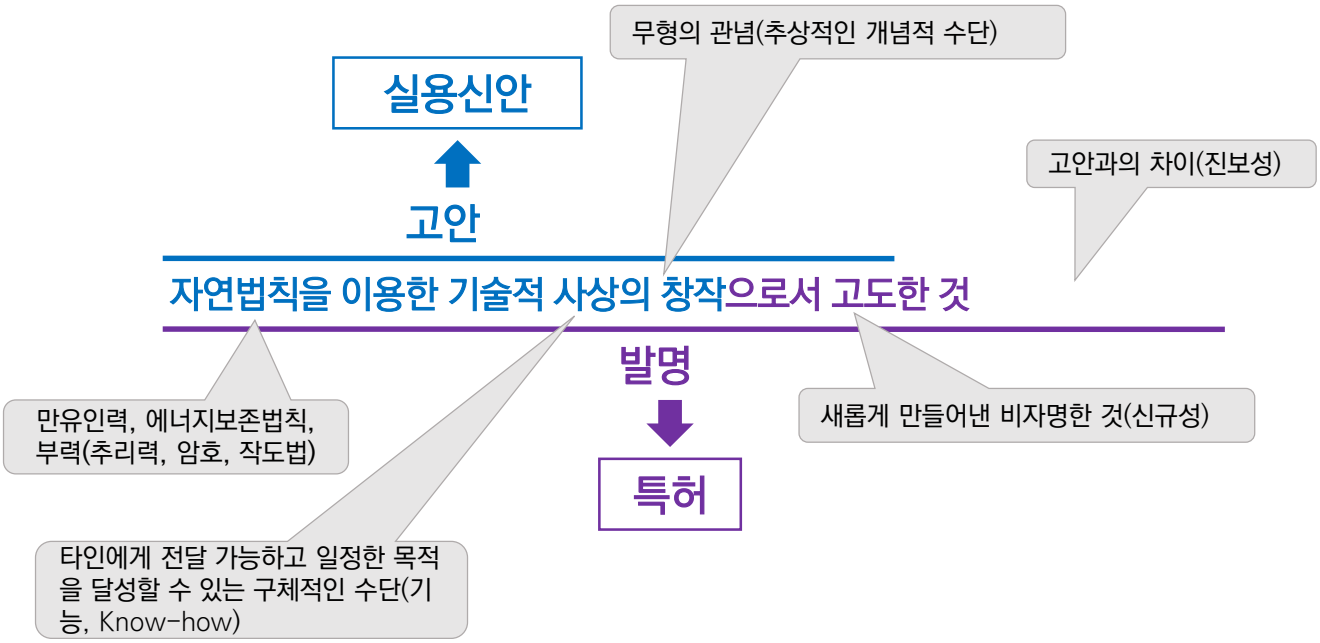

특허법 제2조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2. 발명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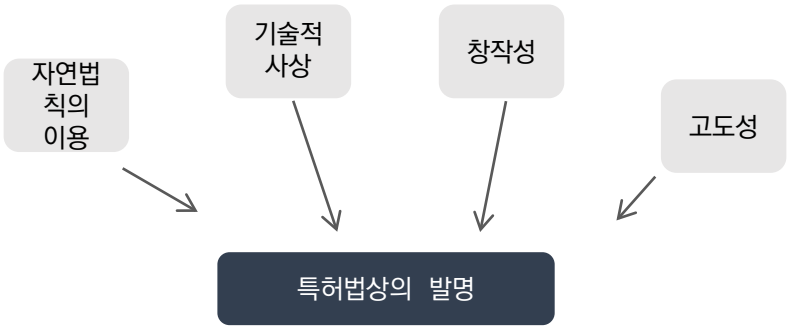

1) 발명의 정의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법 제2조 제1호)

2) 자연법칙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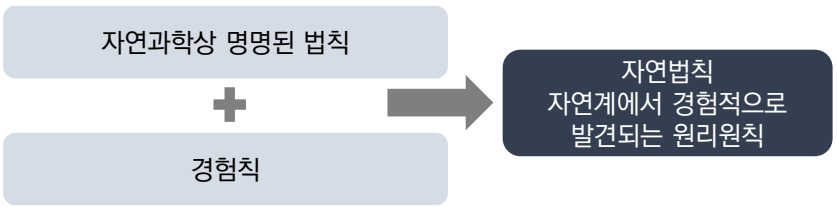

3) 기술적 사상

일정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실시수단을 말하며, 지식으로서의 전달이 가능하여야 하고 제 3자가 같은 방법으로 그 기술을 이용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4) 창작성

발명은 새로이 만들어낸 것이어야 한다. 발견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단, 물질의 신규한 용도를 발견한 경우에는 "용도발명" 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용도발명
용도발명이란 물질의 특정성질을 발견하여 그 성질을 이용하는 발명을 말한다. 용도발명은 발견의 결과를 특정용도로 연결하는 과정에 발명적인 요인(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용도)이 가미되었다는 점에서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된다.

5) 고도성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에서 그 창작수준이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음식특허
음식물. 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 9월부터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물질에 대한 음식물. 기호물로서의 용도발명은 1987. 7월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음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의 범위는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사상이 속하는 모든 활동 영역을 포함한다.

"이용가능성"이란 동일결과를 반복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허출원 시에는 당해 분야에서 이용되지 않더라도 장래에 실시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학술적. 실험적 발명 "오존층의 감소에 따른 자외선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표면 전체를 자외선 흡수 플라스틱으로 둘러싸는 방법발명"은 현식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다.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끽연방법발명과 같이 개인적으로만 이용되는 발명

산업성이 인정되는 의료관련발명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지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된다. 또한, 인체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인체로부터 분리되어 채취한 것(혈액. 소변. 모발 등)을 처리하는 방법발명 또는 이들을 분석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발명은 산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의료기구에 관한 발명 또한 산업성이 인정된다.

7) 신규성

발명의 내용이 일반사회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

항목	내용	
신규성 상실사유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판단기준	시적기준	특허출원시
	지역적기준	국제주의
	물적기준	동일성판단

신규성 상실의 예외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협박, 사기, 스파이 등에 의하여 공지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8) 진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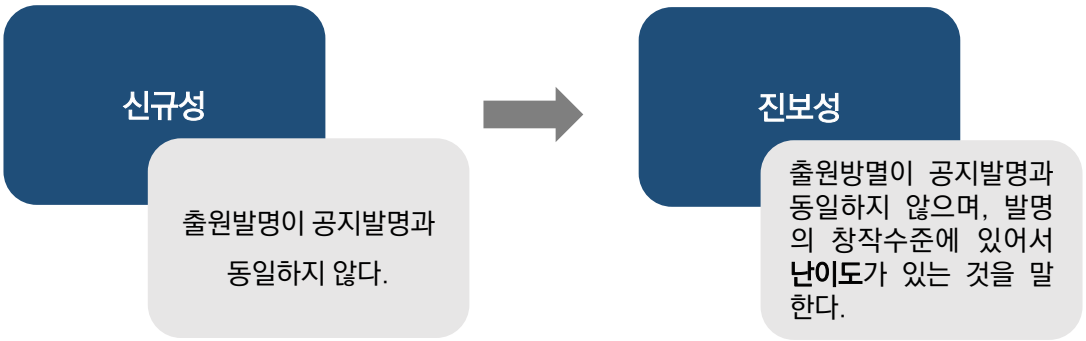

진보성 판단방법

① 일반적인 판단방법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공지된 발명에 의하여 통상의 노력으로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한다.

② 구체적인 판단방법

[진보성 판단방법]

3.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1) 물건발명

발명의 내용이 물건(또는 물질)로 구체화되는 경우이다.

· 제품적인 물건발명

· 재료적인 물건발명

· 물질의 특정성질을 이용하는 물건의 발명

2) 방법발명

발명의 내용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계열적으로 관련되는 행위로 구체화되는 경우이다.

· 단순방법발명

· 물건(물질) 생산방법 발명

3) 용도발명

물질(물건)의 특정성질을 발견하여 그 성질을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발명이다.

· “DDT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살충제”

· “DDT를 벌레에 뿌려 살충하는 방법”

4) 의약발명

의약으로서의 용도가 기재된 발명을 말한다.

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물질의 특성을 새로운 특정 용도로 연결하는 과정 자체에 특허성이 있다.

· 특허 명세서 기재사항 : 약리효과, 유효량 및 투여방법,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실험의 예 (또는 구체적인 설명)

· 새로운 의약물질 발명의 경우 : 제법발명, 물건발명

·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의약품으로서 제조하는 방법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 : 제법발명

4. S·W, BM특허

1)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

형식적으로는 프로그램언어로 표현되어 있어 저작권법 상의 어문저작물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기능적으로는 하드웨어인 컴퓨터 시스템을 동작시키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어 특허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이점

우리나라의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을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종래에 자연법칙의 이용 뿐만 아니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기술적 사상) 여부를 동시에 검토하여 특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2) BM 발명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한다.

· 영업관련 발명

① 컴퓨터 등을 이용한 비즈니스관련 발명

② 순수 비즈니스방법

특이점

BM발명은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시스템으로서 반드시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구체적인 구현방법이 설명되어야 한다. 다만, 특허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기술적인 구현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업방식이나 형태 자체에 대해서이다.

5. 선출원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비교]

선발명주의 | 선출원주의

출원일 기준

항목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주체	선.후출원의 발명자.출원인 동일여부와 무관	선.후출원의 발명자.출원인 동일한 경우 적용 안됨
판단대상	선.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시기	출원공개.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선출원이 출원공개.등록된 경우에 한해 선출원지위 인정
판단범위	동일성 판단	동일성 판단

[주요특허요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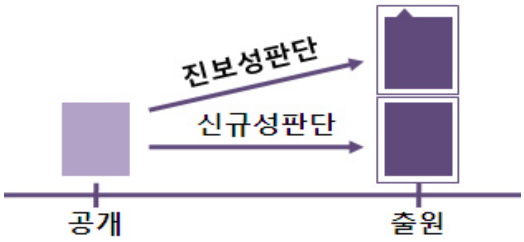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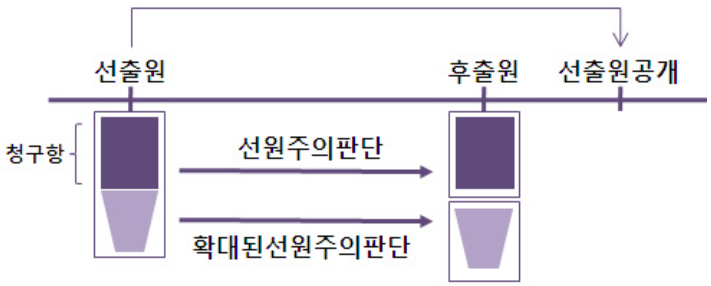

6. 직무발명제도

1) 직무발명 정의

사용자(회사) 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 경우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2) 직무발명 요건

-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
-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종업원 발명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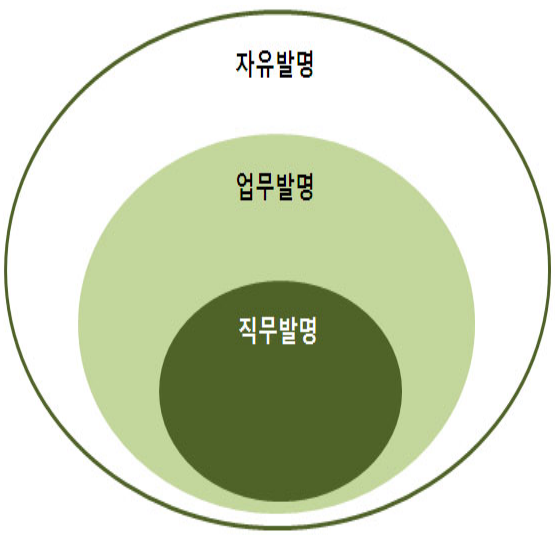

[R&D 선순환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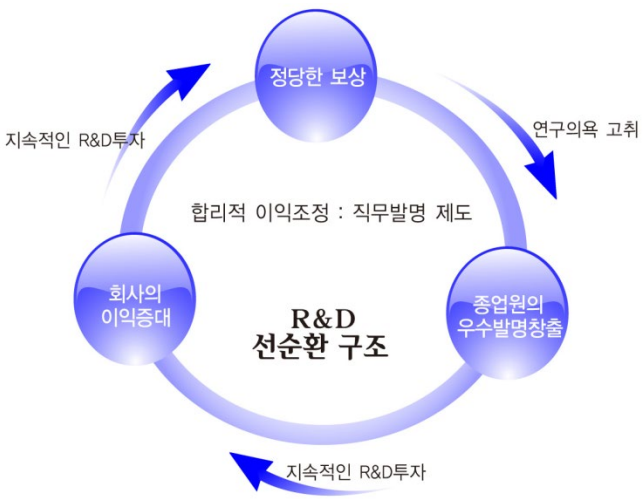

7. Patent Family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즉, 하나의 발명이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경우 기본출원에 대하여 각국의 출원들이 가족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Patent Family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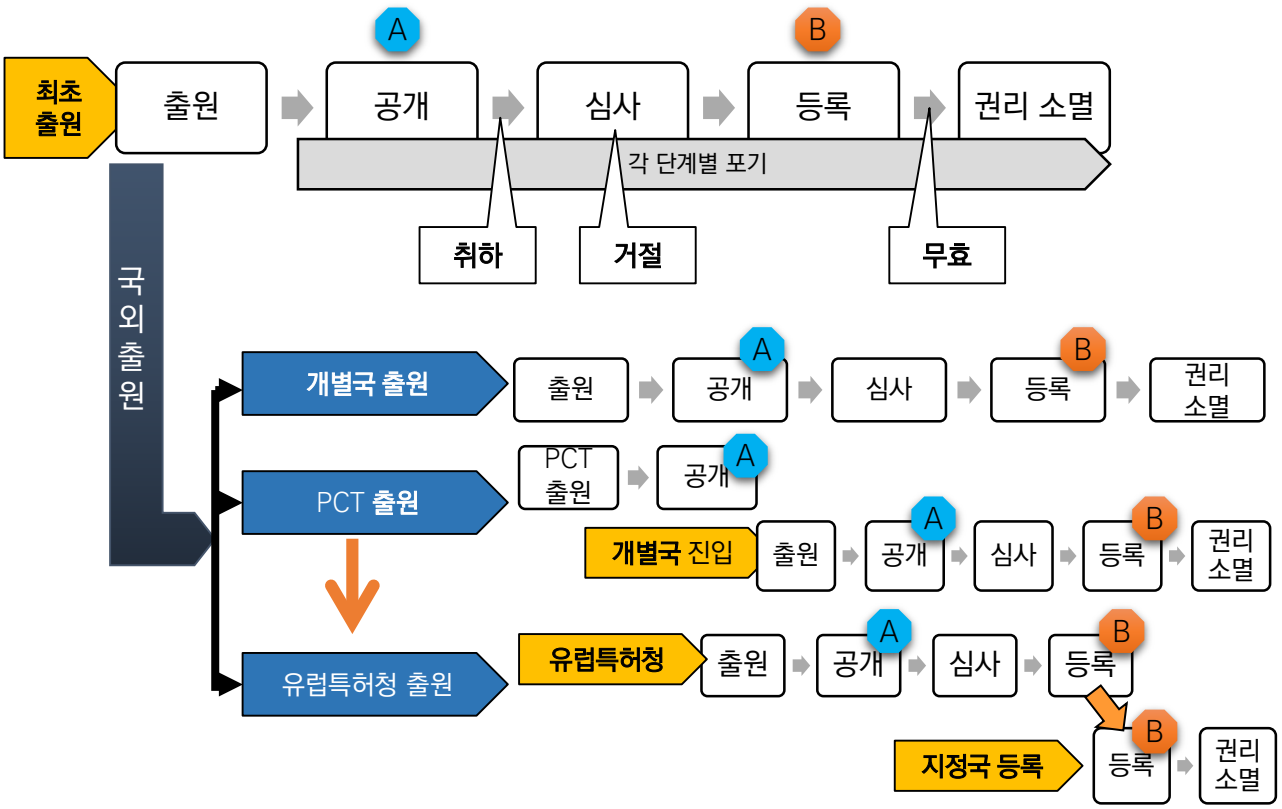

[주요 국가 특징]

	미국	유럽	일본
특징	- 공개주의 Issued Patents(full-text since 1976, full-page images since 1790) Patent Applications(published since 15 March 2001) - 선출원주의 2013년 3월 16일자	- 1977년 발효 - 유럽특허조약에 근거 유럽각국의 회원국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한 178개의 조문 및 시행규칙 106 조문으로 이루어짐 -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이태리 등이 회원국임	- 선출원주의를 채택, 한국과 유사한 발명의 성립성(특허법제2조), 특허의 성립요건(특허법제29조) 적용
종류	- 실용특허(Utility Patent) - 의장특허(Design Patent) - 식물특허(Plant Patent) - 상표(Trademark)로 분류	- 특허 - 의장 - 상표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
존속기간	GATT시행입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며, 의장특허의 존속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4년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상표(10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실용신안(10년), 의장(15년), 상표(10년)
특허출원 종류	- 정규특허출원(Original application, or Non-provisional application) -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 분할출원,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 재발행(ReIssue) 출원	-	-
특허절차	통상 35 USC (Title 35 of the United States Code)라고 하는 특허법률에 의해 특허절차가 규정, 거절이유통지, 최종거절통지, 심판청구, 저촉심사, 재심사	서치 및 방식심사 분리, 출원공개, 심사청구, 이의신청, 특허허여/이의신청, 거절이유통지/거절불복심판 등	출원공개, 심사청구, 우선심사, 조기심사, 특허사정/이의신청, 거절이유통지 / 거절불복심판 등

8. 명세서 개요

1) 명세서 정의

당업자가 용이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세한 설명과 발명에 대하여 부여받고자 하는 보호범위를 기재한 특허청구범위를 포함하는 서면으로 특허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권을 목적으로 국가에 내는 객관적 의사표시 문서를 말한다.

2) 명세서 의의

명세서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發明(관념적 사상 思想)의 기술적인 내용을 문장 文章(서면주의 書面主義)을 통하여 명백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이다.

3) 역할 및 기능

공중의 입장에서 기술문헌으로서 기술내용의 설명서와 공개의사 표시 기능을 갖는다.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보호대상과 범위를 특정하는 독점권을 표시하는 권리서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발명의상세한설명	특허청구범위
출원인	권리해설서 (제42조4항1호)	1.등록전 권리요구서(특허법제42조4항2호,제42조6항) 2.등록후 권리서(특허법제97조)
제3자	기술문헌 (제42조3항)	자유기술영역과 독점배타영역의 경계를 특정함
특허청	심사/심판의 대상을 특정	

9. 특허청구범위 해석

1) 특허청구범위 해석 정의

특허청구범위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여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특허법 제97조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하여진다.”하여 명시하고 있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범위 확정과 침해 판단의 전제가 된다.

2) 특허청구범위 크기 판단

특허권의 크기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따른 특허청구범위의 크기로 결정된다. 청구범위 구성요소가 많을 수록 권리는 협소해진다.

3) 특허청구범위 정의

출원인의 발명의 요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하나 이상의 항(청구항)으로 기재되어 특허명세서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4) 역할 및 기능

보호범위적 기능	구성요건적 기능
출원인이 특허권으로서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하는 것

5) 특허침해 판단역할 및 기능

침해의 의의 및 요건

- 침해 정의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다른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침해의 요건 :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의 실시일 것, 특허발명의 실시일 것, 업으로서의 실시일 것

침해판단의 일반원칙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 비교대상 발명의 실시가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인가를 판단할 때, 비교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구비하여야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특허발명과 비교대상 발명을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구성요소 대 구성요소로 비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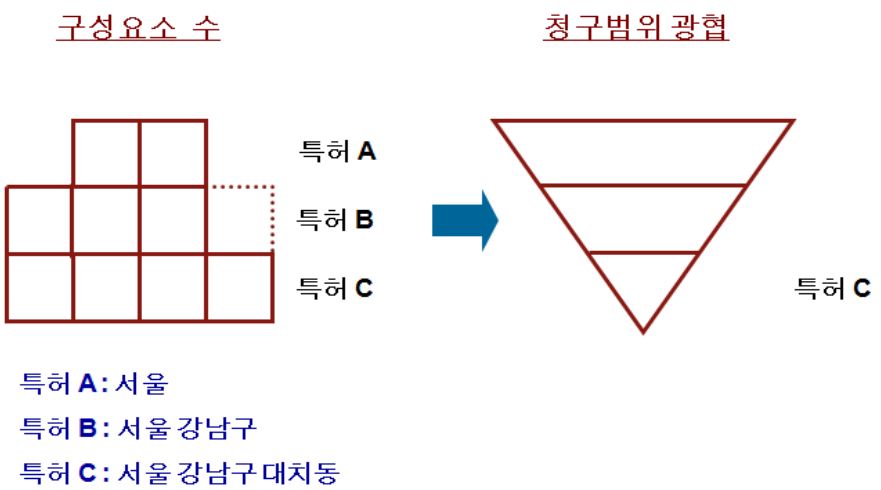

지식재산전략 수립

02 선행특허조사와 특허 창출

1. 특허정보 개요
2. 선행기술조사 개요
3.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4. 선행특허조사 실습
5. R&BD사업과 특허창출 전략

제 1절 특허정보 개요

1. 실용신안제도

- 특허제도와 특허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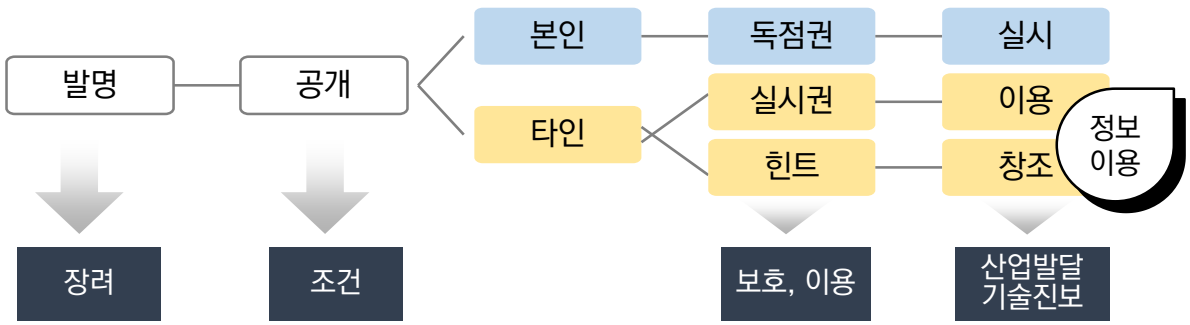

특허문헌정보
• 기술의 공개가 신속 • 실시가능하도록 비밀이 없이 정확하고 상세 • 경제성 •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이론 및 구체적인 실시 예를 설명 • 실시에 대한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설명 • 각 건마다 분류 • 출원된 것은 모두 공개 • 권리가 되지 못하는 것을 포함

기술문헌정보
• 원고제출 후에는 신속하나 원고 제출 전에 • 우선 특허출원 • 총설적인 것도 존재 • 경제성 설명이 부족 • 특정인의 개인적인 견해인 경우도 존재 • 학술적 내용 • 잡지의 분류에 그침 • 일정심사를 거친 것에 한해 공개 • 선전 또는 과장을 포함할 가능성

2. 특허정보 성격과 기능

특허 정보 성격

형식면

- 기재양식이 획일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 세계적으로 통일된 특허분류가 부여되어 있다.
- 출원일순으로 공개된다.(속보성)

내용면

- 명세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기술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 최첨단,최신의 기술이다.
- 국제특허분류 등을 수단으로 하여 다량의 정보 중에서 상호관련성을 추출함으로써, 기술동향, 산업동향,업계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기 타

- 초록,색인,데이터베이스, CD-ROM 등 검색 수단이 풍부하다.
- 특허문헌의 발행처가 각국 특허청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 특허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술분야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 출원일자 등에 의한 시간적 파악이 용이하다.
- 과거 특허문헌이 축적되어 있다.

특허 정보 기능

권리정보적 기능

- 발명자의 소속이나 출원인(권리자) 및 기술의 범위 등 권리 관계를 일반에 공시한다.
- 타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회피함으로써 중복연구와 투자를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 연구원과 기업, 권리화된 기술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공동연구 또는 라이센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자사의 기술과 관계가 있는 타사의 권리기술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써 거절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기술정보적 기능

- 기술개발에 응용
- 기술동향 조사에 응용
- 기술예측의 응용
- 타사의 기술전략 조사에 응용
- 타사의 기술전략 조사에 응용

3. 특허정보 활용

명세서 구성	기술정보로서 특허정보 활용	연구개발 참조 정보
서지사항	특허공보의 첫 페이지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출원했는가”에 대한 서지적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음, 즉, 발명자, 출원인, 우선권, 출원일, 공개일, 공보일, 특허번호, IPC, 발명의 명칭, 요약서 등이 기재되어 있음	▪경쟁사 정보 ▪산업/기술 분야 ▪(핵심)연구자 정보 ▪연구개발 시점 등
인용문헌	본 특허 출원일 이전에 선행기술을 파악할 수 있음(심사관, 발명자)	▪ 선행기술 파악
발명의 목적	동종 업계의 종래기술 및 그 기술적 문제점(과제)을 기술하고 있어서 기술동향 파악이 가능함 =〉 관련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되었고, 연구개발 시 경험하게 될 문제점을 제시	▪연구개발 과제 도출 ▪(연구개발 목표 설정)
발명의 상세한 설명 (구성)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 기능, 작용 실시예를 설명하고 있음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서술하고 있어 특정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데 기술적인 실시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음 =〉 실시예를 통해서 학술문헌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미국 특허법 : 최상의 실시예 best mode)	▪설계 시 참조해야 할 기술 설명 ▪응용분야
작용 효과	연구성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기술완성으로 성취되어야 할 효과 설명
청구범위	특허권리를 실시예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곤란함, 물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당해 특허권자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음	▪기술의 필수 구성요소

명세서 구성	기술정보로서 특허정보 활용	연구개발 참조 정보
서지사항	특허공보의 첫 페이지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출원했는가”에 대한 서지적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음, 즉, 발명자, 출원인, 우선권, 출원일, 공개일, 공보일, 특허번호, IPC, 발명의 명칭, 요약서 등이 기재되어 있음	▪경쟁사 정보 ▪산업/기술 분야 ▪(핵심)연구자 정보 ▪연구개발 시점 등
인용문헌	본 특허 출원일 이전에 선행기술을 파악할 수 있음(심사관, 발명자)	▪ 선행기술 파악
발명의 목적	동종 업계의 종래기술 및 그 기술적 문제점(과제)을 기술하고 있어서 기술동향 파악이 가능함 =〉 관련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되었고, 연구개발 시 경험하게 될 문제점을 제시	▪연구개발 과제 도출 ▪(연구개발 목표 설정)
발명의 상세한 설명 (구성)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 기능, 작용 실시예를 설명하고 있음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서술하고 있어 특정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데 기술적인 실시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음 =〉 실시예를 통해서 학술문헌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미국 특허법 : 최상의 실시예 best mode)	▪설계 시 참조해야 할 기술 설명 ▪응용분야
작용 효과	연구성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기술완성으로 성취되어야 할 효과 설명
청구범위	특허권리를 실시예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곤란함, 물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당해 특허권자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음	▪기술의 필수 구성요소

4. 특허 정보 표준화

1) 서지적 사항 식별코드(WIPO STANDARD ST.9)

INID Code는 Internationally agreed Number for the Identification of Data의 약자이며 1972년 10월에 WIPO 산하 위원회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3년 이후에 발행되는 특허문헌에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INID Code는 출원일, 출원인명, 출원번호 등을 각국의 언어 및 법제의 차이 등을 초월하여 식별되는 유용한 것이다.

특허문헌의 서지적 사항 식별코드(WIPO Standard ST.9)

Category	INID Code	대응하는 서지적 사항
10		**문헌의 식별**
	11	문헌의 번호
	12	문헌종류의 표시
	13	문헌코드의 종류
	19	문헌발행국의 국명코드 또는 타의 식별
20		**국내출원의 Data**
	21	출원의 번호
	22	출원일
	23	박람회에 출품한 날,가명세서 제출 후의 완전 명세서 제출일을 포함,출원에 관한 기타일
	24	산업재산권의 효력 발생일
	25	공개된 출원이 최초에 제출되었을 때의 언어
	26	출원이 공개되었을 때의 언어
30		**우선권 Data**
	31	우선권주장 출원번호
	32	우선권 주장일
	33	우선권 주장 국명코드
	34	우선권의 기초가 된 지역 또는 국제출원의 파리조약국명
40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표한 날**
	41	심사되지 않은 문헌이 청구에 의해 복제 또는 열람에 의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표한 날 (단,그날까지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문헌에 대해서)
	42	심사된 문헌이 청구에 의해 복제 또는 열람에 의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표한 날 (단,그날까지 권리부여가 되지 않은 문헌에 대해서)
	43	심사되지 않은 문헌이 인쇄 또는 유사한 방법에 의해 발행된 날
	44	(단,그날까지 권리부여가 되지 않은 문헌에 대해서) 심사된 문헌이 인쇄 또는 유사한 방법에 의해 발행된 날
	45	(단,그날까지 권리부여가 되지 않은 문헌에 대해서) 문헌이 인쇄 또는 유사한 방법에 의해 발행된 날
	46	(단, 그날까지 권리부여가 되지 않은 문헌에 대해서)
	47	문헌의 청구범위만이 인쇄에 의해 발행된 날 문헌이 청구에 의해 복제 또는 열람에 의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표한 날 (단,그날까지 권리부여가 된 문헌에 대해서)

Category	INID Code	대응하는 서지적 사항
50		**기술적 정보**
	51	국제특허분류
	52	국내분류
	53	국내 10 진 분류
	54	발명의 명칭
	55	Key Word
	56	본문과의 별도로 기재된 선행기술 문헌목록
	57	요약 또는 청구범위
	58	Search 분야
60		**법률상의 관련되는 다른 국내 특허문헌의 표시**
	61	추가에 의한 관계
	62	분할에 의한 관계
	63	계속에 의한 관계
	64	재발행에 의한 관계
	65	같은 출원에 관해 이전에 공표된 문헌의 관계
	66	선출원의 포기로 현재의 출원이 인정받게 된 선출원의 번호와 출원일
70		**문헌에 관계되는 사람의 표시**
	71	출원인
	72	발명자
	73	권리자
	74	대리인
	75	출원인이기도 한 발명자
	76	출원인 및 권리자이기도 한 발명자
80		**파리조약이외의 국제조약에 관한 Data 의 식별**
	81	PCT 지정국
	83	부다페스트조약등에 의한 미생물 기탁에 관한 정보
	84	아주 특허조약에 의한 지정체약국
	85	PCT 에 의거 국내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PCT 제 22 조와 제 39 조의 요구를 충족한 날
	86	지역 또는 PCT출원의 출원 Data,즉 출원번호 공개된 출원일 최초로 제출되었을 때의 언어,출원일
	87	지역 또는 PCT 출원의 공개 Data,즉 공개번호 출원이 공개되었을 때의 공개일
	88	Search Report 의 지연공개일
	89	발명자증 등의 상호승인에 관한 CMEA 협정에 의한 최초문헌의 출원일,문헌번호 및 국가
90	91	국내 또는 지역단계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결정된 날짜 또는 국내 또는 지역단계 진입 실패로 인하여 지정국에 더 이상 효과가 없게 된 날짜

2) 특허문헌의 식별 코드(WIPO STANDARD ST.16)

각종 특허문헌을 식별하기 위한 PCIPI(특허정보에 관한 상설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코드의 하나이다. 각종 특허문헌을 문자코드로 식별하여 문헌의 보관 및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WIPO 표준 ST.16 Code라고 한다.

표준 ST.16 Code는 " Alphabet 문자 1자리 + 아라비아 숫자 1자리 "로 구성된다.

"Alphabet 문자"는 산업재산권의 종류와 공개의 단계를 나타내고, "아라비아 숫자"는 각국의 특허제도에 적합하게 정하여 사용하도록 Option-Code로 되어 있다.

표준 ST.16의 근본취지는 정기간행물과 이에 첨부되는 색인목록 등 단행본 자료의 분류에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임의적으로 정하는 숫자코드는 일련번호순으로 발행되는 상이한 문헌에 대해 보다 명확한 식별을 위해서이다.

특허문헌의 식별코드(WIPO Standard ST.16)

그룹명	그룹별 식별내용 및 기호
[Group1]	특허문헌의 최초 또는 주요 Series에 사용
	A: 제1차 공개 B: 제2차 공개 C: 제3차 공개 (통상적으로 주요 특허문헌의 일련번호로 확정된 문헌)
[Group2]	특허문헌의 2차 Series에 사용
	E: 제1차 공개 F: 제2차 공개 G: 제3차 공개 (구법하의 프랑스 특허나 미국의 재발행 특허)
[Group3]	각국의 특허청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특허문헌이외의 Series 에 사용
	H,I (미국의 국방관계 자료와 같이 예외적인 자료에 국한)
[Group4]	특허문헌 중 주요한 특수형태의 문헌에 사용
	M: 의약특허문헌 P: 식물특허문헌 S: 의장특허문헌
[Group5]	Group1 의 특허문헌 이외에 Number-Series 를 갖고 있는 실용신안문헌에 사용
	U: 제1차 공개 Y: 제2차 공개 Z: 제3차 공개
[Group6]	기타
	N: 비특허문헌 X: 특허청 내부 이용에 한정되는 문헌 (일련번호순으로 나타나는 자료의 공간을 표시하기 위한 INPADOC 에서 사용하는 코드)
[Group7]	ST.16 에는 없으나 INPADOC 에 제정한 사항으로 일정한 국가 사이에 국제적인 효력관계를 나타내는 자료
	W: PCT 국제출원 R: 일정한 국가를 위한 EP 또는 OAPI 지역 출원

예시

EP - EUROPEAN PATENT OFFICE (EPO)

A1 APPLICATION PUBLISHED WITH SEARCH REPORT

-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of October 5, 1973, Art. 93	- First level of publication - Published in multiple copies - Published from 1978 - Main numbering series common to other kinds of documents is used	- Used on printed documents and in machine-readable records from 1978

A2 APPLICATION PUBLISHED WITHOUT SEARCH REPORT

-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of October 5, 1973, Art. 93	- First level of publication - Published in multiple copies - Published from 1978 - Main numbering series common to other kinds of documents is used	- Used on printed documents and in machine-readable records from 1978

A3 SEARCH REPORT

- Separate publication of search report (to the application coded A9)	- First level of publication - Published in multiple copies - Main numbering series common to other kinds of documents is used	

PCT 출원공개와 유사 A1/A2/A3

A4 SUPPLEMENTARY SEARCH REPORT

- Drawn up in accordance with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of October 5, 1973, Art. 157	- First level of publication - Not published in multiple copies but open to public inspection and copies available on request	

ST.16 Code	REFERENCES TO PATENT LAW	PUBLICATION DETAILS	APPLICATION OF CODE
B1	PATENT SPECIFICATION		
	-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of October 5, 1973, Art. 98	- Second level of publication - Published in multiple copies - Published from 1979 - Main numbering series common to other kinds of documents is used	- Used on printed documents and in machine-readable records from 1978
B2	NEW PATENT SPECIFICATION		
	- Amended specification -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of October 5, 1973, Art. 103	- Third level of publication - Published in multiple copies - Published from 1981 - Main numbering series common to other kinds of documents is used	- Used on printed documents and in machine-readable records from 1978

Note: The kind of document code "A0" may be encountered in computer databases, and is used to identify the bibliographic details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as announced in the Gazette published by this Office.

3) 특허분류

특허분류 체계 IPC/CPC

분류기호	F	-	16	K	1/100	1/20
구분	섹션	서브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
분류타이틀	기계공학	공업일반	기계요소	밸브	리프트밸브	나사스핀들

구조	자리수
섹 션	영문1
클 래 스	숫자2
서브클래스	영문1
그 룹	숫자3
서 브 그 룹	숫자3

A	HUMAN NECESSITIES	생활필수품
B	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처리조작; 운수
C	CHEMISTRY; METALLURGY	화학; 야금
D	TEXTILES; PAPER	섬유, 지류
E	FIXED CONSTRUCTIONS	고정구조물
F	MECHANICAL ENGINEERING; LIGHTING; HEATING; WEAPONS; BLASTING ENGINES OR PUMPS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G	PHYSICS	물리학
H	ELECTRICITY	전기
Y	GENERAL TAGGING OF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S; GENERAL TAGGING OF CROSS-OVER TECHNOLOGIES SPANNING OVER SEVERAL SECTIONS OF THE IPC	신기술 개발의 일반 태그 지정

5. 한국특허공보 해석

1) 제목

공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면, 우선 제목의 “등록특허공보”라는 것은 이 공보가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된 최종 버전의 서지적 사항 및 명세서를 게재하는 것이다. 만일 이 부분이 “공개특허공보”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심사를 거친 것이 아니고 출원한지 1년 6개월(조기공개를 신청한 경우는 이보다 빠를 수 있음)이 되어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공보에 게재된 명세서의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보정이 이루어져 바뀔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즉, 최종 확정된 명세서의 내용으로 볼 수가 없다는 뜻이다.

2) 등록번호

등록번호는 특허의 고유번호이다. 등록번호의 앞부분의 ‘10’은 특허라는 의미이다. 실용신안은 ‘20’, 의장은 ‘30’ 그리고 상표는 ‘40’ 등으로 구분한다.

3) 출원일자

출원일자는 발명이 최초로 특허청에 접수된 날짜 즉, 특허 출원일을 의미한다. 이 날짜는 다양한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는데, 이 특허를 심사할 때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발명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이 되고, 이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우선권 및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기도 하며, 특허의 존속기간은 이 날짜로부터 20년으로 설정하는 등 매우 중요한 날짜이다.

4) 대리인

대리인란에는 이 발명의 출원 절차를 대리하는 변리사의 이름이 들어간다. 여기에는 특허 사무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리사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며 법인 형태로 된 특허법인의 경우에만 “특허법인 갑을” 등으로 기재된다. 만일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발명자나 출원인이 직접 절차를 행한 경우는 이 부분은 당연히 생략된다.

5) 심사청구

심사청구란에는 본 출원의 심사청구 여부가 기재된다. 심사청구란 출원을 하고 심사를 청구하니 심사를 진행해 달라는 행정절차이다. 흔히 출원과 동시에 하지만 출원 후 5년 이내에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5년이 경과된 출원은 심사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취하로 간주된다.

6) 심사관

‘심사관’ 란에는 이 발명을 심사한 심사관의 이름이 기재된다. ‘출원명’에는 발명의 명칭이 기재된다. 발명의 명칭은 발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간단한 제목으로서, 특허권의 권리범위와는 무관하다.

7) 발명의 요약

'발명의 요약'에는 발명의 기술분야, 핵심 청구범위, 발명의 효과 등을 간단하게 요약한다. 이 요약 역시 특허의 권리범위와는 무관한 데이터베이스 용도라 보면 된다.

8) 대표도

'대표도'에는 발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을 적시한다.

9) 색인어

한편 '색인어'는 데이터베이스 용도로서 이 발명을 검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주요 키워드를 적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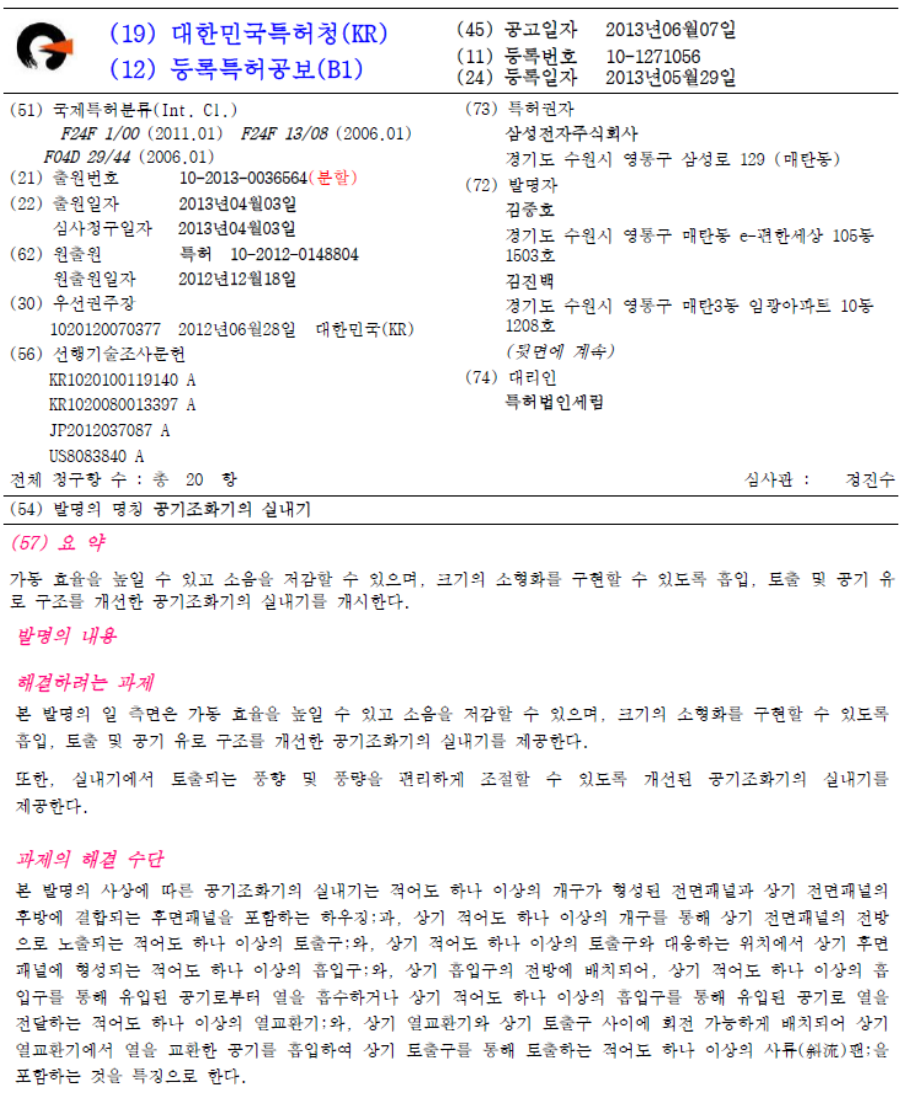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3년06월07일
(11) 등록번호 10-1271056
(24) 등록일자 2013년05월29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F24F 1/00 (2011.01) *F24F 13/08* (2006.01)
F04D 29/44 (2006.01)
(21) 출원번호 10-2013-0036564(분할)
(22) 출원일자 2013년04월03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4월03일
(62) 원출원 특허 10-2012-0148804
원출원일자 2012년12월18일
(30) 우선권주장
1020120070377 2012년06월28일 대한민국(KR)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100119140 A
KR1020080013397 A
JP2012037087 A
US8083840 A
전체 청구항 수 : 총 20 항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매탄동)
(72) 발명자
김중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e-편한세상 105동 1503호
김진백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임광아파트 10동 1208호
(뒷면에 계속)
(74) 대리인
특허법인세림

심사관 : 정진수

(54) 발명의 명칭 공기조화기의 실내기

(57) 요 약

가동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소음을 저감할 수 있으며, 크기의 소형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흡입, 토출 및 공기 유로 구조를 개선한 공기조화기의 실내기를 개시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의 일 측면은 가동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소음을 저감할 수 있으며, 크기의 소형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흡입, 토출 및 공기 유로 구조를 개선한 공기조화기의 실내기를 제공한다.

또한, 실내기에서 토출되는 풍향 및 풍량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된 공기조화기의 실내기를 제공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른 공기조화기의 실내기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개구가 형성된 전면패널과 상기 전면패널의 후방에 결합되는 후면패널을 포함하는 하우징;과,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개구를 통해 상기 전면패널의 전방으로 노출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토출구;와,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토출구와 대응하는 위치에서 상기 후면패널에 형성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흡입구;와, 상기 흡입구의 전방에 배치되어,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흡입구를 통해 유입된 공기로부터 열을 흡수하거나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흡입구를 통해 유입된 공기로 열을 전달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열교환기;와, 상기 열교환기와 상기 토출구 사이에 회전 가능하게 배치되어 상기 열교환기에서 열을 교환한 공기를 흡입하여 상기 토출구를 통해 토출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류(斜流)팬;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6. 중국특허공보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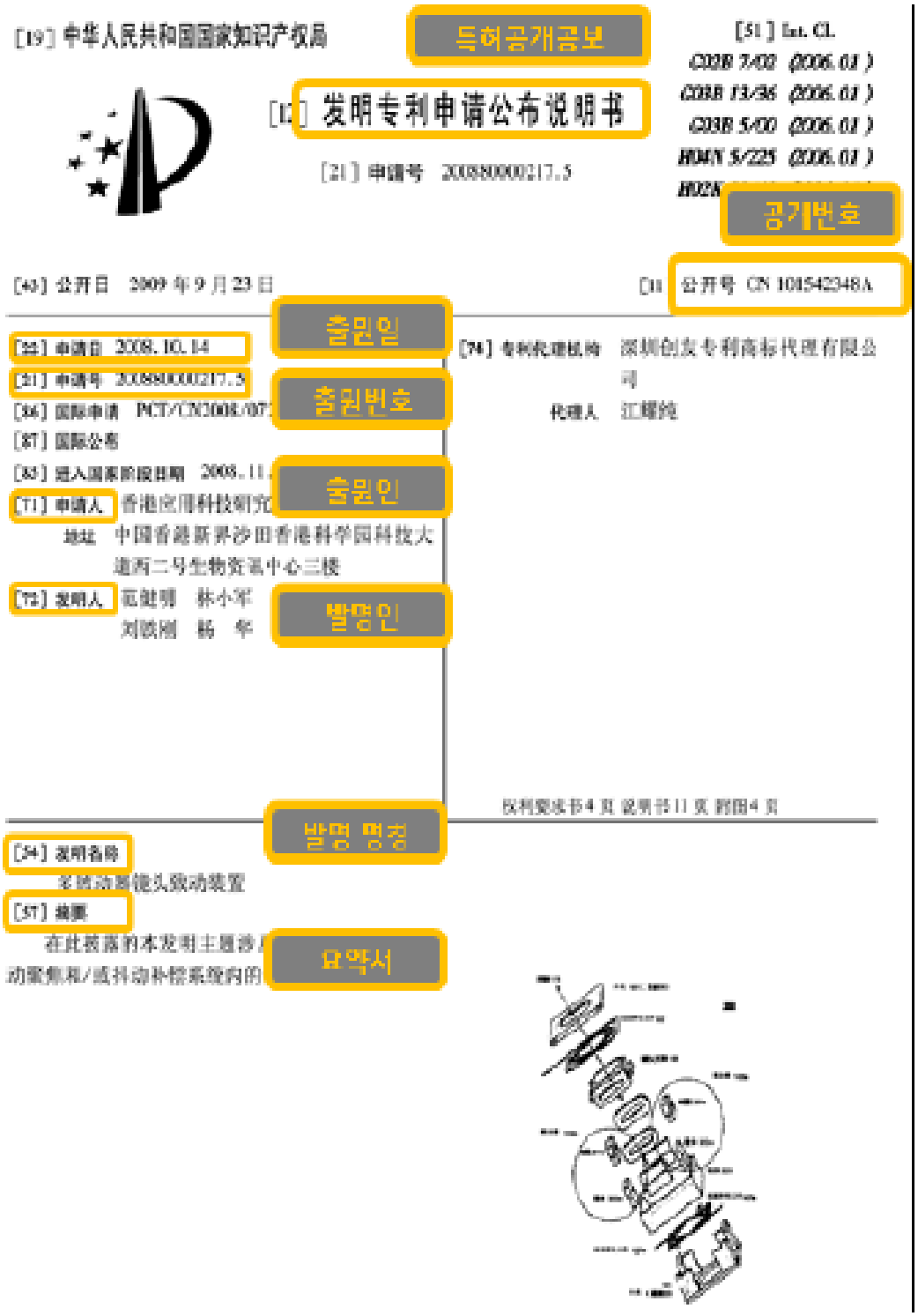
[19]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
특허공개공보
[51] Int. Cl.
G02B 7/02 (2006.01)
G03B 13/36 (2006.01)
G03B 5/00 (2006.01)
H04N 5/225 (2006.01)
[12] 发明专利申请公布说明书
[21] 申请号 200880000217.5
공개번호
[43] 公开日 2009年9月23日
[11] 公开号 CN 101542348A
출원일
[22] 申请日 2008.10.14
[21] 申请号 200880000217.5
출원번호
[86] 国际申请 PCT/CN2008/07
[87] 国际公布
[85] 进入国家阶段日期 2008.11.
출원인
[71] 申请人 香港应用科技研究
地址 中国香港新界沙田香港科学园科技大道西二号生物资讯中心三楼
[72] 发明人 范健明 林小军
刘跌刚 杨 华
발명인
[74] 专利代理机构 深圳创友专利商标代理有限公司
代理人 江耀纯
权利要求书4页 说明书11页 附图4页
발명 명칭
[54] 发明名称
多级动圈镜头致动装置
[57] 摘要
在此被露的本发明主题涉
动聚焦和/或抖动补偿系统内的
요약서

❑ 특허출원번호 예시

申请号	CN 2006 8 1234567.3 ① ② ③ ④ ⑤

중국특허출원번호는 출원연도 4자리, 출원종류 1자리 및 일련번호 7자를 포함하여 모두 12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었다.

❑ 특허출원번호의 각 부분의 의미

① 국가코드:
중국국가코드 CN과 특허출원번호를 함께 사용하여 특허출원이 SIPO에서 수리한 것임을 나타낼 수 있다. CN과 특허출원번호 사이에 빈칸 하나를 두어도 된다.

② 연도 4자리:
출원 연도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2006은 2006년에 수리한 특허출원임을 나타낸다.

③ 출원종류 1자리:
1은 발명특허출원, 2는 실용신안특허출원, 3은 디자인특허출원, 8은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한 PCT 발명특허출원, 9는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한 실용신안특허출원을 의미한다.

④ 일련번호 7자리:
연도별 출원순서에 따라 차례로 부여된 번호로서 0000001부터 9999999까지 사용하며, 매 연도의 1월1일부터 일련번호는 0000001부터 다시 시작한다.

❑ 특허공개/등록번호 예시

公开号/公告号	CN 1 12345678 A ① ② ③ ④

특허공개번호와 특허등록번호는 출원종류 1자리와 일련번호 8자리를 포함하여 모두 9자리 숫자로 구성되었다.

❑ 특허공개/등록번호의 각 부분의 의미

① 국가코드:
중국국가코드 CN과 특허공개번호 또는 특허등록번호를 함께 사용하여 특허문헌이 중국에서 출판 및 공개된 것임을 나타낸다. CN과 특허공개번호 또는 특허등록번호 사이에 빈칸 하나를 두어도 된다.

② 출원종류 1자리:
1은 발명특허출원, 2는 실용신안특허출원, 3은 디자인특허출원을 나타낸다.

③ 일련번호 8자리:
발명특허출원이 처음으로 공개될 때, 또는 실용신안출원이나 디자인출원이 처음으로 등록될 때 부여된 번호를 나타낸다. 발명특허 등록번호는 발명특허출원이 처음으로 공개될 때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문헌종류		문헌번호	비고
공개공보	초판	CN 1 00378905 A	서로 다른 특허출원은 출원순서에 따라 다른 번호 부여
		CN 1 00378906 A	
	서지사항만 재출판	CN 1 00378905 A8	동일한 특허출원은 처음으로 공개될 때의 공개번호를 그대로 사용
	전문 재출판	CN 1 00378905 A9	
등록공보	초판	CN 1 00378905 B	동일한 특허출원의 등록공고번호는 처음으로 공개될 때의 공개번호를 그대로 사용
	서지사항만 재출판	CN 1 00378905 B8	
	전문을 재출판	CN 1 00378905 B9	
	부분 무효(제1차)	CN 1 00378905 C1	
	부분 무효(제2차)	CN 1 00378905 C2	

제 2절 선행기술조사 개요

1. 특허정보 조사 개요

- 특허조사 : 기술조사와 권리조사
- 각국 특허청의 발행 및 소장 현황 : 특허자료의 종류, 내용, 발행형태, 발행량, 특허자료의 소장 장소
- 특허자료 입수 방법 : 입수 서비스 기관 현황

조사종류	조사자료	검색 Key	조사목적
주제조사	분류별 색인지 초록지 D/B, CD-ROM	각종 특허분류 Key-Word	- 출원시의 선행기술조사 - 정보제공, 이의신청, 무효 심판의 증거자료 조사
기업동향조사	출원인 색인 D/B, CD-ROM	출원인 기업명 개인명	- 연구개발 정보, 기업경영정보의 입수 - 권리관계의 체크
번호조회조사	번호대조표 색인지,D/B	특허번호	- 단계적 특허번호 확인 - 분류 확인
심사경과조사	출원포대 (File Wrapper)	출원번호 등록번호	- 심사경과와 출원인, 제3자의 수속 유무 및 내용
등록원부조사	등록원부	등록번호 출원번호	- 권리의 존속, 소멸 - 실시권의 설정 - 권리이전
대응특허조사	DIALOG 등 상용 D/B	우선권 DATA 출원번호	- 최우선 공지특허 발견 - 해외 특허권의 유무 확인 - 독해 가능한 명세서 입수

2. 선행기술조사

1) 정의

출원된 발명(고안)과 같거나 유사한 기술내용이 출원 전에 일반 공중에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2) 선행기술조사의 범위 : 특허법 명시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실시된 발명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당해 출원의 출원일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되고 당해 출원의 출원 후에 국내에서 공개 또는 공고된 발명
- 당해 출원의 출원일 전이나 같은 날에 국내에 출원된 발명

3) 선행기술 조사 목적 및 활용

특허성 요건(신규성,진보성 등 거절이유로 인용) 기준

3. 특허정보조사 목적

1) 신기술(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입수

목적	종류
• 관련 기술분야의 개발흐름을 파악 • 연구개발 테마를 선정하거나 미래기술 예측 • 선행기술조사로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 방지 • 기술개발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입수 • 타사의 기술개발 동향 파악	서지사항조사 특정기술조사

2) 특허출원원전 권리획득 가능성 검토

목적	종류
• 특허취득 가능성 판단 및 기술적 범위의 확인 • 무용한 특허출원 지양	특허성조사

3) 특허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증거자료 입수

목적	종류
• 자사의 실시기술에 대한 공지기술 확보 • 타사 보유 특허조사로 특허분쟁 사전 예방 • 침해가능 특허에 대한 회피설계 가능 여부 파악 • 자사의 특허망 형성에 이용 • 특허권 소멸여부 확인	무효조사자료 계속조사 권리조사

출처 : 특허청(2007),「선행기술조사메뉴얼」

4. 조사 기술 이해

1) 출원발명의 이해

- 종래기술 파악
- 발명의 상세한 설명 파악
-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 청구항으로 발명을 특정
- 청구항이 불명확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 발명을 특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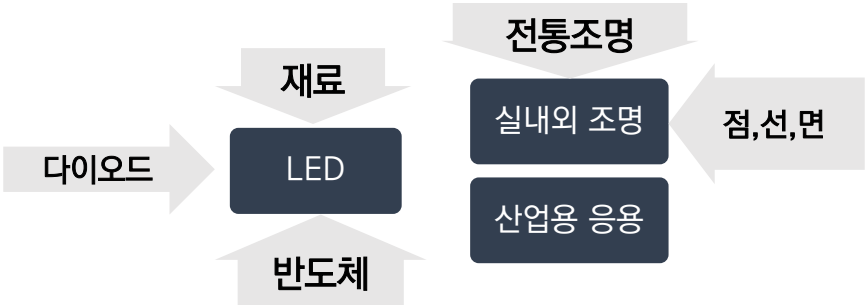

2) 선행기술조사

3) 인용발명의 이해

- 공지된 발명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 학회지 등의 원고 접수와 공지여부, 카다로그의 반포성, 출원일과 간행물의 발행일이 같은 날인 경우, 학위논문 반포시점(공개발표,도서관 입고, 불특정배포)

4) 특허성 판단

5. 특허정보 조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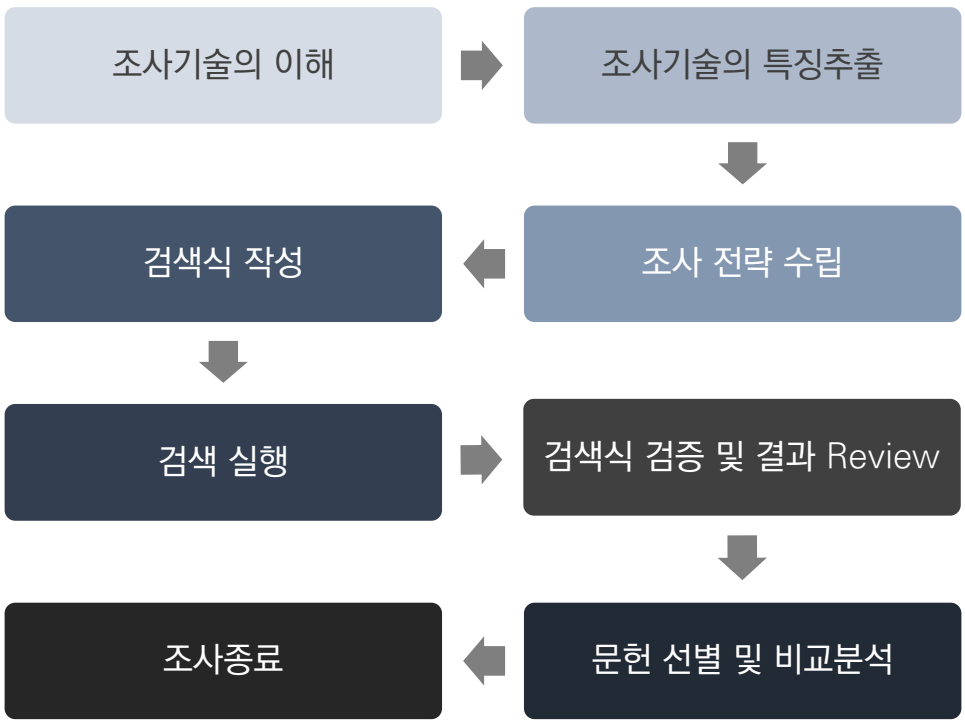

6. 발명(조사기술)의 이해

1) 산업분야 파악

2) 발명의 종류 파악

- 실시 형태로 분류/발명의 실체로 파악
- 물건의 발명-형체를 갖는 물로 구체화된 것
- 방법의 발명-일정의 방법으로 구체화된 것

3) 해당 분야 기술수준의 파악

- 출원 내용의 이해
- 알고 있는 선행기술이나 주변기술과의 관계
- 출원인이 제시한 선행기술 문헌의 이해
- 특허공보로부터 최근 기술동향 파악

4)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의 인정

- 청구항의 기재를 발명의 구성요소(발명 특정 사항)로 분해

[조사기술 이해도]

-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What problem does the invention solve?)
- **발명이 무엇인가?**
  (What is the invention?)
- **발명이 무엇을 하는가?**
  (What does the invention do?)

문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코일의 인슐레이터 튜브를 제거하는데 별도의 반침수단이 필요하고, 인슐레이션 튜브의 절단면 전체를 용융시켜야 하므로 작업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함
해결책	발명이 무엇인가? (구성)	절단홈을 가진 절단날 및 파지부를 구비한 제1, 2절단부재, 절단날을 가열하는 제1, 2전열히터
	발명이 무엇을 하는가? (기능)	전열히터가 절단홈을 가진 절단날을 가열하여 인슐레이션 튜브를 가열하여 제거를 쉽게 한다.

7. 조사 전략 수립

1) 조사 방법 : 수작업, D/B 검색

2) 조사 대상 국가

3) 문헌의 범위

- 신규성, 진보성 판단 범위
- 특허문헌 이외의 검색 여부
- 언어적 해독 가능여부
- 조사 목적 : 선행기술조사,무효조사 등

4) 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 결정

8. 검색

1) 검색식 작성

- DB 특성 파악
- 검색Key 결정 : 검색어 ,특허분류(IPC 등)
- 검색어의 조합 방법
  근접어, 인접어 연산 방법
  광의 단어 제한 여부, 협의 단어 조합 여부 등
- 특정연도의 제한 여부 : 조사목적에 따라
- 언어적 특성 고려 : 한국어,영어

2) 검색어 선정 방법론

- 각 구성요소의 검색어 확장-언어적 특성 고려
  - 영어(어미/어두 변화), 영미식 혹은 일본식 표현
  - 외국어,외래어,국어의 혼용 여부
  - 약어와 전문어 구분
  - 동음이의어,이음동의어,유사어,단복수,변화형,하이픈
  - 동의어 사례 : 텔레비젼, 테레비젼, 텔레비전, 테레비, TV, 티비, 화상표시장치, Television 등

- 키워드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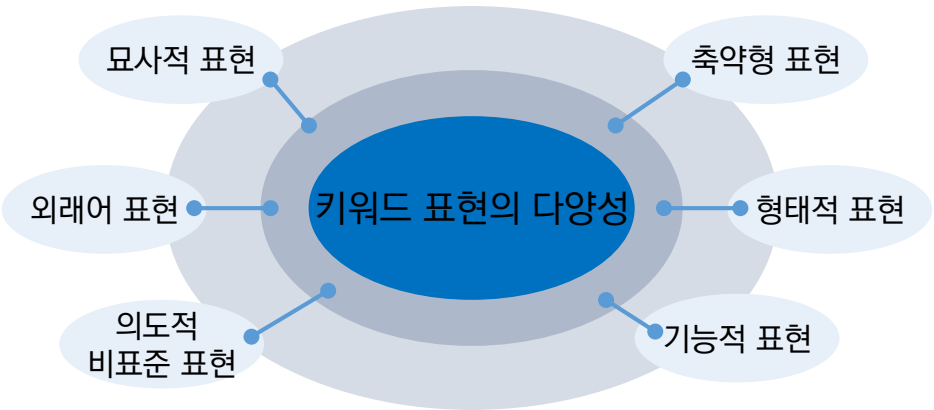

3) 검색어 확장 사례

A(영어)=car(자동차),

•확장 단어 : a=vehicle, a'=automobile, a"= automotive ---
•추가 단어 : taxi, bus, truck,

검색어 A element

•A'=(A or a or a' or a" or a"')
•CAR = vehicle OR automobile OR automotive OR taxi OR bus OR truck

A(한글)=자동차

•확장 단어 : 카, 승합차, 승용차, 버스, 택시, 트럭, 특장차, 트레일러, ---

검색식 : cut OR trim OR server OR laminate OR shear

WORD	사전적 의미	영한 사전
Cut	1.to make a narrow opening in (something) with a sharp edge or instrument,accidentally or on purpose 2.to remove from the main part of something with a sharp instrument 3.to divide or separate with a sharp edge or instrument 4.to make by using a sharp instrument	1.(칼따위로) 베다 2.절단하다 3.베어 가르다 4.자르다
Trim	1.to make neat,even,or tidy by cutting or removing unwanted parts 2.to decorate,esp.round the edges 3.to reduce,esp.by removing what is unnecessary 4.to move (a sail)into the correct position so that the boat will sail well	1.깎아 다듬다 2.손질하다 3.삭감하다 4.(돛을) 조절하다
Sever	1.to divide into usu. Two parts,esp.by cutting 2.to separate,esp.by violent cutting 3.to bring to an end(a relatingship,etc.:break off	1.가르다,절단하다 2.분리하다 3.사이를 떼다
Laminate	1.to make (a strong material) by joining many thin sheets of the material on top of each other 2.to cover with thin metal of plastic sheets	1.얇은 조각으로 만들다 2.박판을 씌우다
Shear	1. to cut the wool off (a sheep) or esp. literary to cut (the hair on a person's head) close to the skin	1.털을 깎다. 2.자르다. 절단하다

4) D/B 검색 비교

검색 D/B	검색식 (*:후방절단, ?:1자절단)	검색건수	절단자 적용 여부	검색항목
DELPHION	si and zn and coat	580	절단자연산자 적용	명칭,요약
	si and zn and coat*	600		명칭,요약
IPDL	si* and zn* and coat*	719	후방절단 자동 적용	명칭,요약,출원인 자동적용
es@pacenet	si and zn and coat	41	절단자연산자 적용	명칭,요약
	si and zn and coat*	716		명칭,요약
	si??? and zn??? and coat???	164		명칭,요약
WIPS	si and zn and coat =>si* and zn* and coat*	30	전후방절단	명칭,요약
	si and zn and coat*	611	후방절단 적용시	명칭,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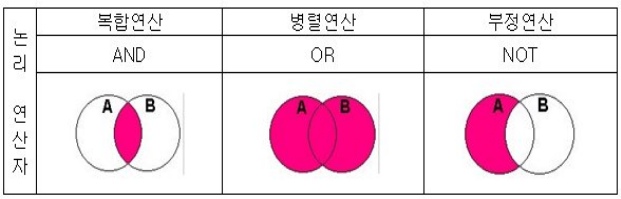

제 3절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1. KIPRIS 한국특허검색

1) 특허실용 검색이동 및 검색어 입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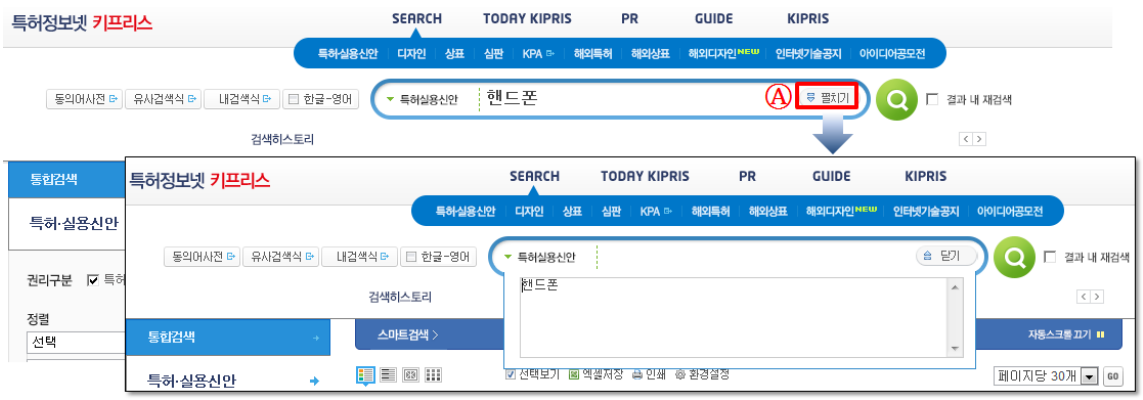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SEARCH
TODAY KIPRIS
PR
GUIDE
KIPRIS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KPA
해외특허
해외상표
해외디자인
인터넷기술공지
아이디어공모전
동의어사전
유사검색식
내검색식
한글-영어
특허실용신안
핸드폰
팔치기
결과 내 재검색
⑤
검색히스토리 핸드폰
통합검색
스마트검색 >
항목별 검색을 위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자동스크롤 끄기
특허·실용신안
①
②
선택보기
엑셀저장
인쇄
환경설정
③
페이지당 30개
GO
④
Total 30,173 Articles (1 / 1,006 Pages)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권리구분 특허 실용
정렬
선택
선택
행정처분
전체 거절 등록
소멸 무효 취하
포기 공개
최인
분류통계
검색결과에서 아래 항목별로 최대 20개 년도로 분류통계가 가능합니다.
소멸 [1] 핸드폰의라디오기능부가방법및장치(The apparatus and method adding function of radio to cellular phone)
IPC : H04B 7/26
출원번호 : 1019920010686
등록번호 : 1001888730000
공개번호 : 1019940001601
대리인 : 김영철
출원인 : 주식회사 엘지이아이
출원일자 : 1992.06.19
등록일자 : 1999.01.13
공개일자 : 1994.01.20
발명자 : 김규태
열기
거절 [2] 핸드프리 겸용 카오디오(CAR AUDIO HAVING COMBINED FUNCTIONS OF A HANDS FREE DEVICE, ESPECIALLY FOR USING EITHER A CAR AUDIO APPARATUS OR A HANDS FREE DEVICE BY APPLYING THE HANDS FREE FUNCTION INTO THE CAR AUDIO APPARATUS)
IPC : H04B 1/06
출원번호 : 1019970060903
출원인 : 최상호
출원일자 : 1997.11.18
검색식 저장
마이폴더 보기
마이폴더 저장
마이폴더 전체저장
온라인 다운로드
실시간인기검색어 Today KIPRIS
1 LED
2 애완
3 차량
4 강아지
5 자동차

기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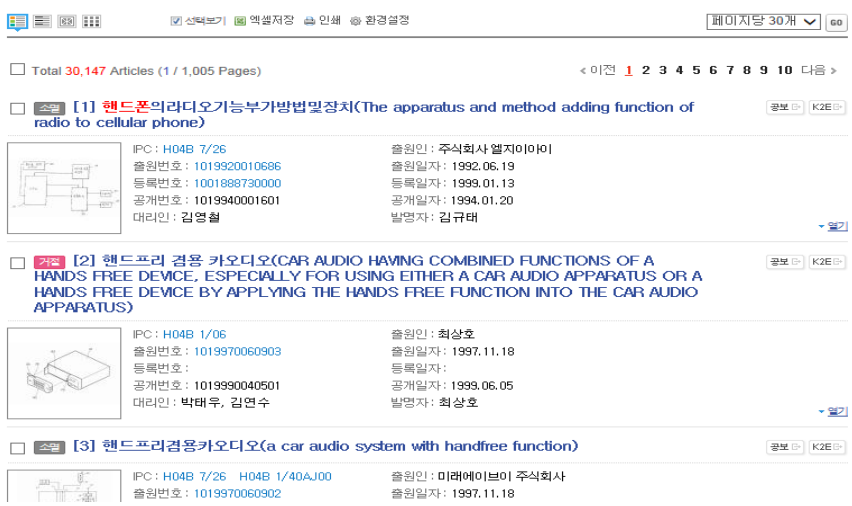
선택보기
엑셀저장
인쇄
환경설정
페이지당 30개
GO
Total 30,147 Articles (1 / 1,005 Pages)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소멸 [1] 핸드폰의라디오기능부가방법및장치(The apparatus and method adding function of radio to cellular phone)
IPC : H04B 7/26
출원번호 : 1019920010686
등록번호 : 1001888730000
공개번호 : 1019940001601
대리인 : 김영철
출원인 : 주식회사 엘지이아이
출원일자 : 1992.06.19
등록일자 : 1999.01.13
공개일자 : 1994.01.20
발명자 : 김규태
열기
거절 [2] 핸드프리 겸용 카오디오(CAR AUDIO HAVING COMBINED FUNCTIONS OF A HANDS FREE DEVICE, ESPECIALLY FOR USING EITHER A CAR AUDIO APPARATUS OR A HANDS FREE DEVICE BY APPLYING THE HANDS FREE FUNCTION INTO THE CAR AUDIO APPARATUS)
IPC : H04B 1/06
출원번호 : 1019970060903
등록번호 :
공개번호 : 1019990040501
대리인 : 박태우, 김연수
출원인 : 최상호
출원일자 : 1997.11.18
등록일자 :
공개일자 : 1999.06.05
발명자 : 최상호
소멸 [3] 핸드프리겸용카오디오(a car audio system with handfree function)
IPC : H04B 7/26 H04B 1/40AJ00
출원번호 : 1019970060902
출원인 : 미래에이브이 주식회사
출원일자 : 1997.11.18

초록함께보기

선택보기
엑셀저장
인쇄
환경설정
페이지당 30개
GO
Total 30,147 Articles (1 / 1,005 Pages)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소멸 [1] 핸드폰의라디오기능부가방법및장치(The apparatus and method adding function of radio to cellular phone)
IPC : H04B 7/26
출원번호 : 1019920010686
등록번호 : 1001888730000
공개번호 : 1019940001601
대리인 : 김영철
출원인 : 주식회사 엘지이아이
출원일자 : 1992.06.19
등록일자 : 1999.01.13
공개일자 : 1994.01.20
발명자 : 김규태
초록 본 발명은 핸드폰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핸드폰에 라디오기능을 부가하여 원하는 신호대의 라디오방송을 청취할 수 있으며 라디오방송수신 도중에 착신되는 링신호가 있으면 통화가능한 통화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핸드폰의 라디오기능 부가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일반적으로 핸드폰은 휴대용 통신기기로서 사용되는데, 기존의 핸드폰은 전화기로서의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을뿐 그외의 다른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대기기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
거절 [2] 핸드프리 겸용 카오디오(CAR AUDIO HAVING COMBINED FUNCTIONS OF A HANDS FREE DEVICE, ESPECIALLY FOR USING EITHER A CAR AUDIO APPARATUS OR A HANDS FREE DEVICE BY APPLYING THE HANDS FREE FUNCTION INTO THE CAR AUDIO APPARATUS)
IPC : H04B 1/06
출원번호 : 1019970060903
등록번호 :
공개번호 : 1019990040501
대리인 : 박태우, 김연수
출원인 : 최상호
출원일자 : 1997.11.18
등록일자 :
공개일자 : 1999.06.05
발명자 : 최상호
초록 본 발명은 핸드프리 겸용 카오디오에 관한 것으로, 카오디오의 전면에 핸드폰이 안착되는 핸드폰 안착부가 형성되어 있는 한편, 상기 핸드폰 안착부의 일측에는 상기 핸드폰이 상기 핸드폰 안착부에 안착되면 상기 핸드폰과 상기 카오디오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단자부가 구비되어 있어, 핸

2) 검색편의 기능

기능명칭	내용	사용법
선택보기	검색 결과 중 몇 개 항목을 선택하여 볼 수 있는 기능	검색 결과에서 발명의 명칭 앞에 위치한 체크박스를 체크 후 선택보기 버튼 클릭
엑셀저장	검색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	엑셀저장 버튼 클릭 후 저장위치 지정
인쇄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현재 페이지를 인쇄하는 기능	프린터 연결 및 온라인 상채 확인 후 인쇄버튼 클릭
환경설정	검색결과에 선택정보를 추가하여 함께 보는 기능	추가할 항목 선택 및 저장 후 재검색 후 검색 결과에서 열기 버튼 클릭

상세정보 보기

상세정보

공개(공고)전문

등록사항

심판사항

통합행정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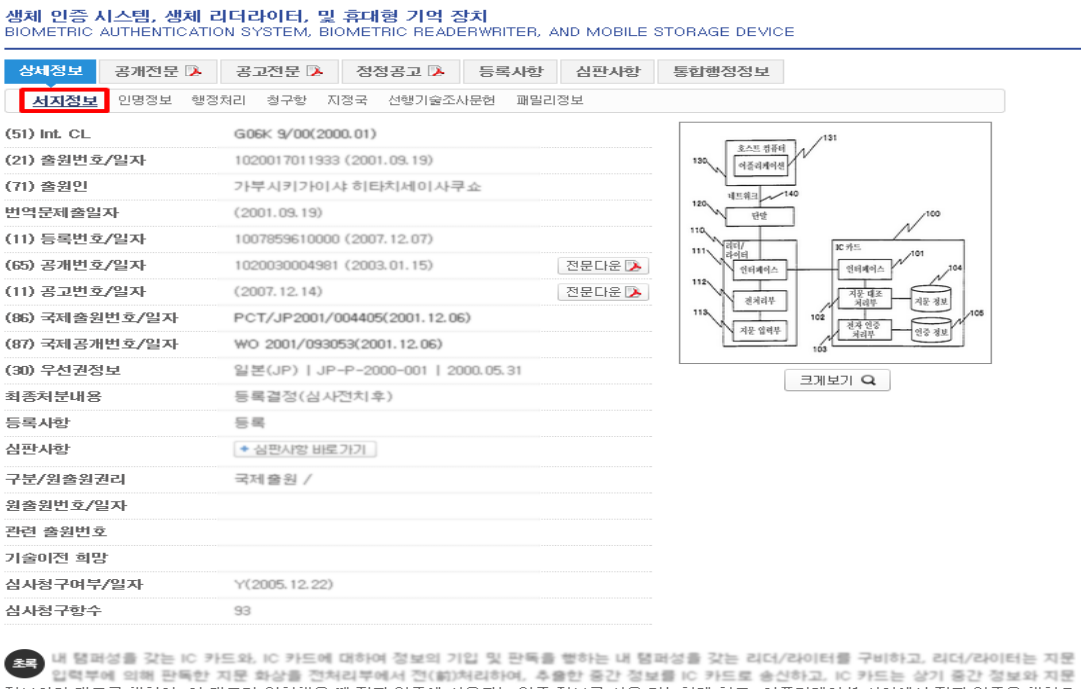

3) KIPRIS 검색 연산자

구분		상세내용	검색예
단어검색		특정 단어가 포함 된 특허 검색	디스크
구문검색		검색어가 순서대로 인접하여 나열되어 있는 특허실용 검색 (공백과 복합명사, 조사, 특수문자가 포함된 경우도 검색)	"데이터 신호"
논리연산	AND 연산(*)	입력된 키워드 2개가 모두 포함된 특허실용 검색	휴대폰*케이스
	OR 연산(+)	입력된 키워드 중 한개라도 포함된 특허실용 검색	핸드폰+휴대폰
	NOT 연산(!)	입력된 키워드 2개 중 한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한개는 포함되지 않는 특허실용 검색	자동차*!클러치
	NEAR 연산(^)	첫번째 검색어와 두번째 검색어의 거리가 1단어(^1), 2단어(^2), 3단어(^3) 떨어진 특허실용 검색 (3단어까지만 지원하고 순서를 고려하여 검색함)	자동차^2각도
	절단자 연산(?)	일부 번호가 제외된 번호에 대한 특허실용 검색 (번호 검색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용법은 검색도움말-스마트검색-번호정보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2012-0001234

2. 미국 특허청 특허검색

http://www.uspto.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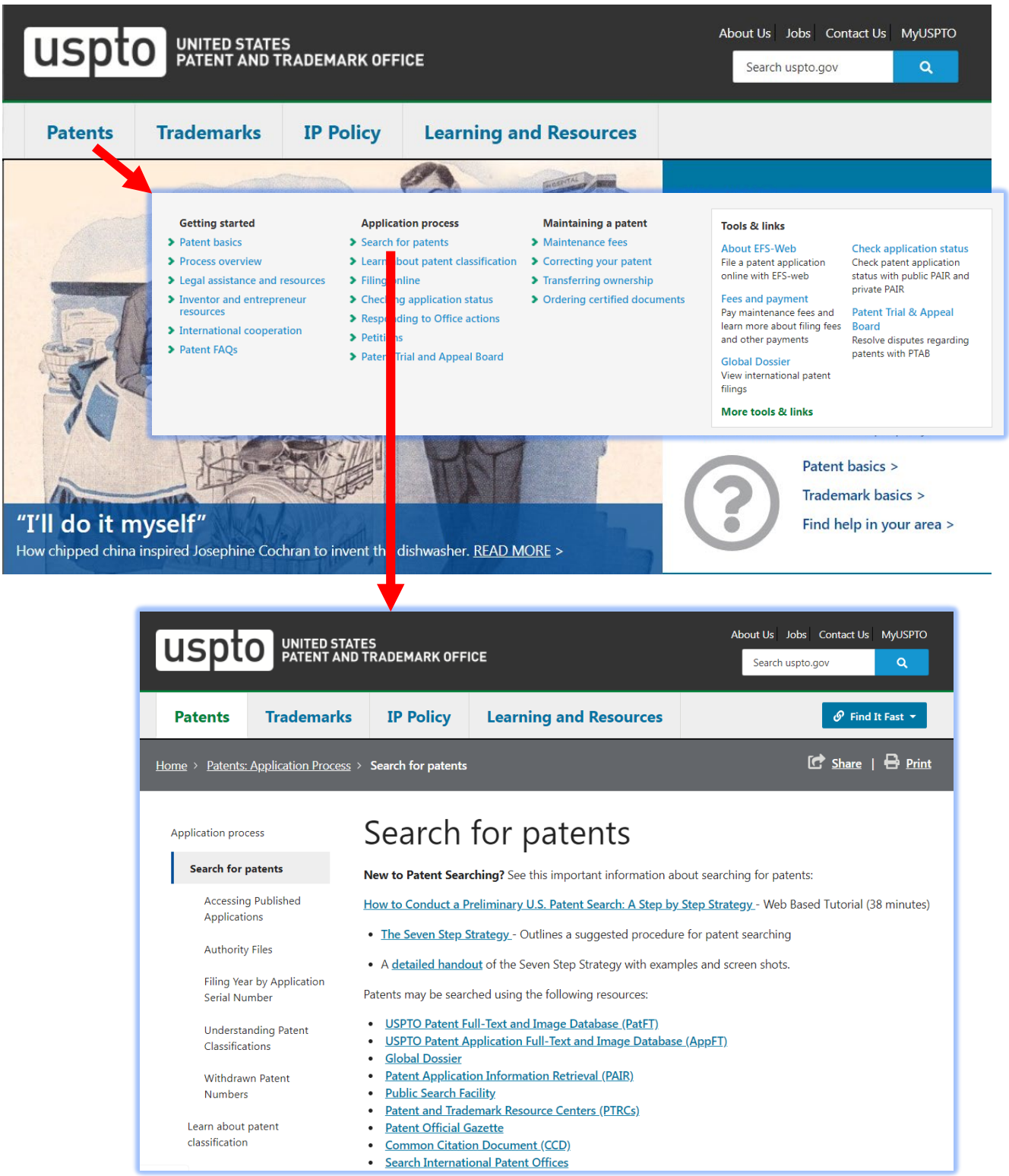

1) 검색화면 : Quick 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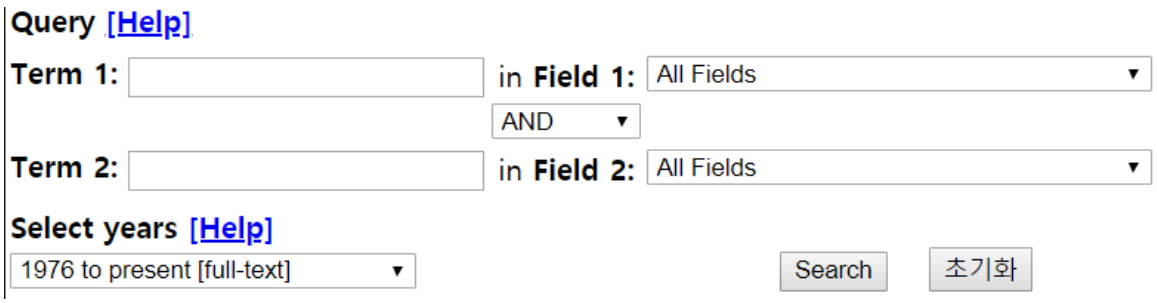

2) 검색화면 : Advanced 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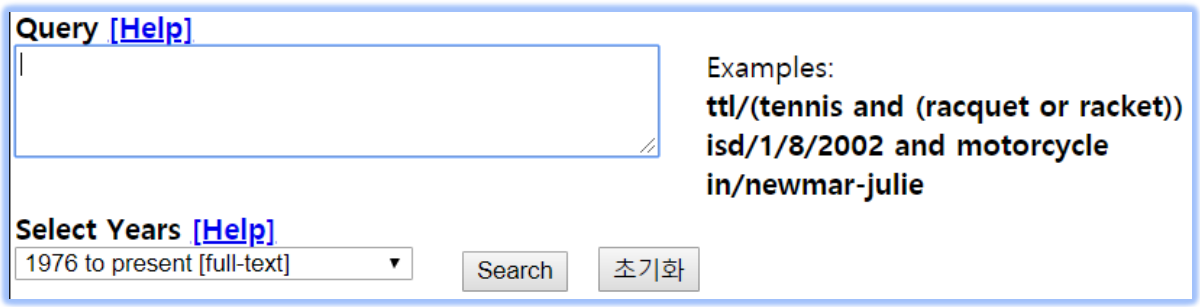

3. 유럽 특허청 특허검색

1) 유럽 특허청 (EPO) : http://worldwide.espacene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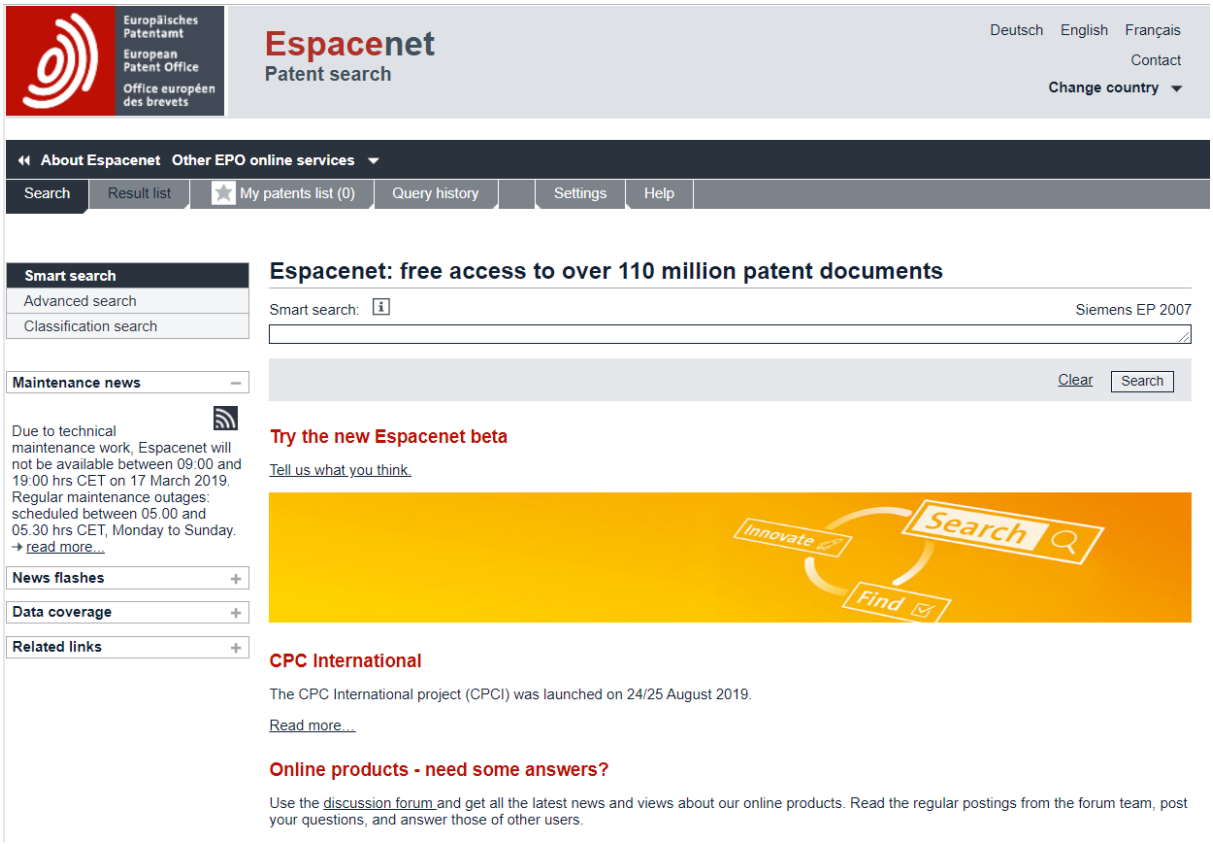

유럽특허 검색 필드

- The OR operator
  - You can use the OR operator to extend the range of your search.
  - Example: car OR automobile OR vehicle
  - This query will return all documents containing at least one of the three terms.
  - OR is the default operator for the 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application number and priority number fie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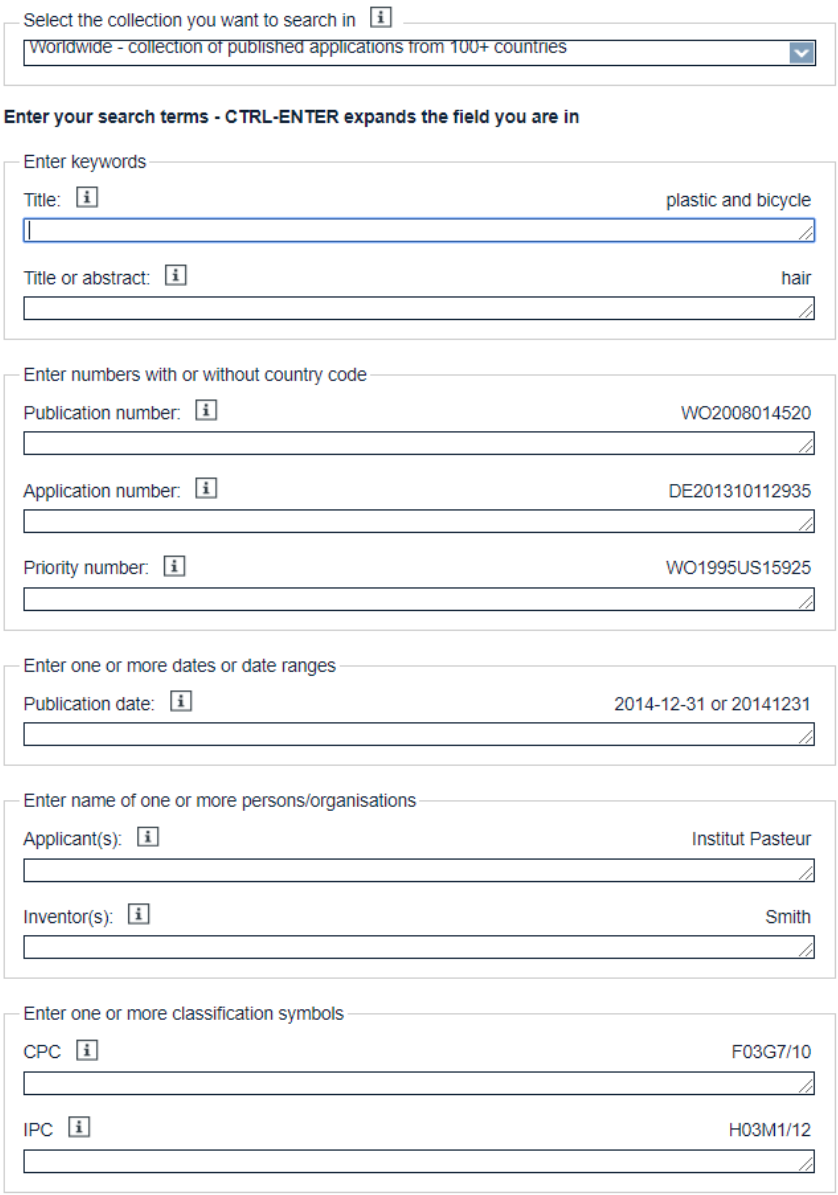

- The AND operator
  - You can use the AND operator to limit the range of your search. Your query will return only those documents which contain all the terms combined with the AND operator.
  - AND is the default operator for the title , abstract , inventor , a pplicant , CPC and IPC fields.

- The NOT operator
  - You can also use the NOT operator to limit the range of your search.
  - Example: nail NOT finger
  - Your query will return only those documents which do not contain the term following the NOT operator.
  - NOT cannot be placed at the beginning of a search field. It can only be entered after a search term.

2) WIPO : https://patentscope.wi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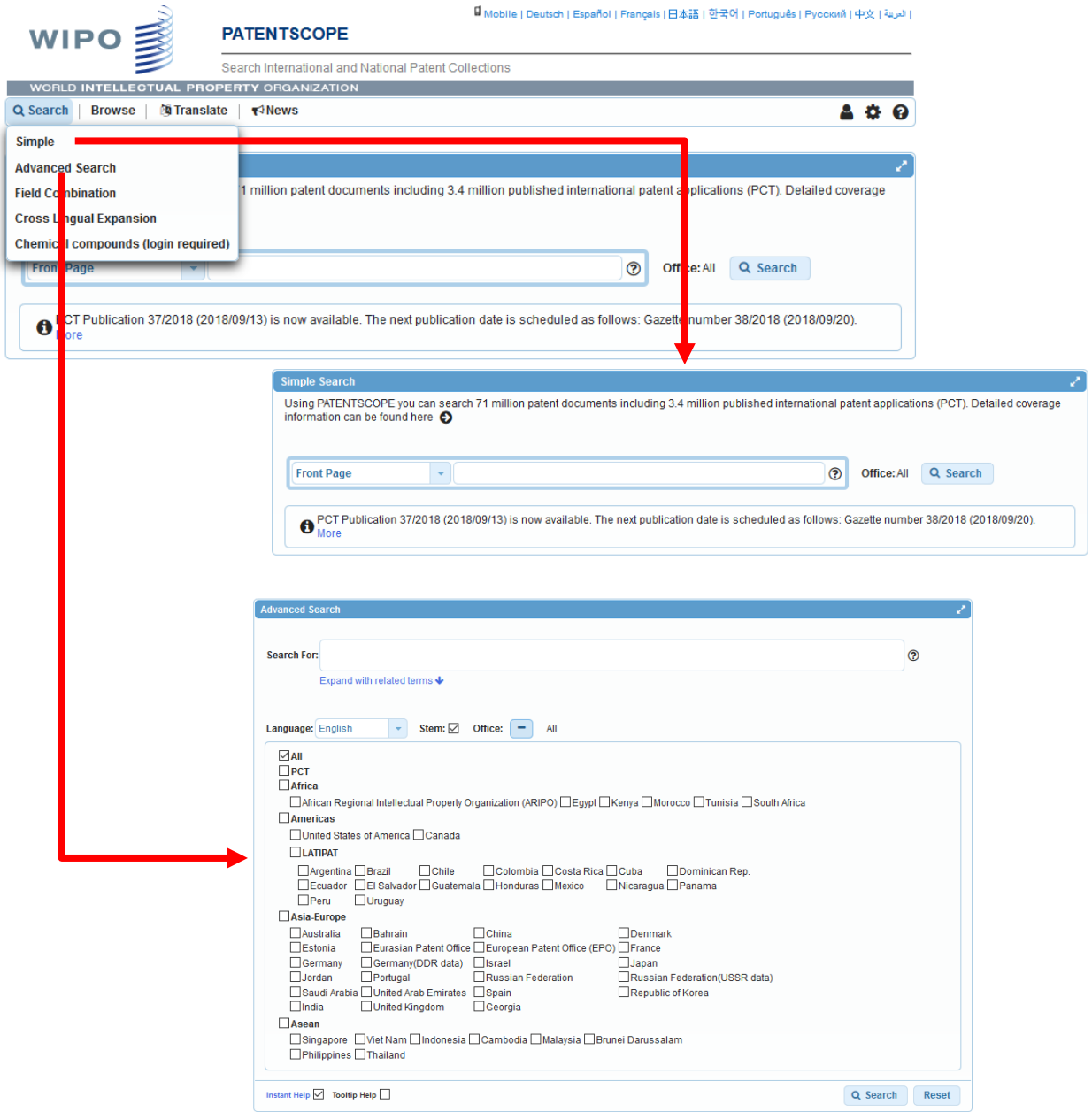

4. 일본 특허청 특허검색

1) IPDL : https://www.j-platpat.inpit.go.jp → japanese → IPDL

- AND : 검색어 다음 공백
- OR : 번호 다음 공백
- 특허 · 실용신안 번호 검색
  - Xyy – nnnnnn (연호 (令和= R 또는 r, 헤세이 = H 또는 h, 쇼 = S 또는 s 다이쇼 = T 또는 t 메이지 = M 또는 m) + 일본식 연도 2 자리 + 하이픈 (–) + 일련 번호 6 자리)
  - yyyy – nnnnnn (서기 년 4 자리 + 하이픈 (–) + 일련 번호 6 자리)
  - nnnnnn (일련 번호 6 자리)
  - nnnnnnn (일련 번호 7 자리)
  - AAyyyy – nnnnnn (번호 종별 (특원, 특개, 특표,特公실제 출원,実開실제 표 실제 공 실제 전체) + 서기 년 4 자리 + 하이픈 (–) + 일련 번호 6 자리)
  - AAXyy – nnnnnn (번호 종별 (특원, 특개, 특표,特公실제 출원,実開실제 표 실제 공 실제 전체) + 연호 (令和= R 또는 r, 헤세이 = H 또는 h 쇼 = S 또는 s 다이쇼 = T 또는 t 메이지 = M 또는 m) + 일본식 연도 2 자리 + 하이픈 (–) + 일련 번호 6 자리)
  - AAnnnnnn (번호 종별 (特明,実明) + 일련 번호 6 자리)
  - AAnnnnnnn 호 (특허 (특허 제 특허 제) + 일련 번호 7 자리 + 호)
  - AAnnnnnnn 호 (특허 실용 신안 (실용 신안 등록 제 실용 신안 등록 제) + 일련 번호 7 자리 + 호)
  - AAyyyy – nnnnnn (PCTJP (PCT / JP, WO 다시 표) + 서기 년 4 자리 + 하이픈 (–) + 일련 번호 6 자리)

- 문헌 종류 및 번호 검색

特許·実用新案番号照会／OPD
▸ ヘルプ
文献を選択した場合、特許·実用新案、外国文献、非特許文献(公開技報)の各種公報を照会できます。
OPD照会を選択した場合、世界各国の特許庁が保有する出願·審査関連情報(ドシエ情報)を照会できます。
照会は、発行国・地域/発行機関、種別を選択し、番号を入力してください。
検索対象
文献
OPD照会
入力種別
番号入力
入力した番号単独で検索します。番号を複数入力する場合は、それぞれをスペースで区切り入力してください。
番号範囲入力
指定した番号の範囲で検索します。
DOCDB形式入力
入力した番号単独で検索します。国・地域コードを、番号に含めて入力してください。
?
発行国・地域/発行機関
番号種別
番号
日本(JP)
特許出願番号
例) 2019-00012X 2019-12X H31-00012X
削除
日本(JP)
公開番号·公表番号(A)
例) 2019-00012X 2019-12X H31-00012X
削除
日本(JP)
公告番号(B)
例) 2019-00012X 2019-12X H31-00012X
削除
日本(JP)
特許番号(B)·特許発明明細書番...
例) 123456X 12345X
削除
追加
照会
クリア

제 4절 선행특허조사 실습

실습

[선행특허조사 실습]

제 5절 R&BD사업과 특허창출 전략

1. 특허 요지 해석 방법

- 청구범위, 특허의 핵심 기술(구성요소), 기타 기술 내용 등을 요약
- 분석 목적에 따라 요지를 추출해야 함
- 기술정보 측면과 권리정보 측면에서 요지 추출이 상이함(다음 표 참조)

명세서	기술정보	권리정보
서지사항	출원일자, 발명자, 출원인	법적 등록 상태, 권리자 변동사항 분석
인용문헌	선행문헌과 후원문헌의 기술발전 관점에서 요약	●선후원 문헌의 출원인 분석 ●선후원 문헌과의 유사도 비교 분석
발명의 목적	**해결 과제** 요약	
발명의 상세한 설명	설계 시 참조 기술 설명	등록 청구범위 해석 중심으로
작용 효과	기술완성으로 성취되어야 할 효과 설명	
청구범위	다음을 참조하여 독립항 중심으로 **해결 수단**을 요약함 ● 장치 : 핵심 구성요소 중심으로 요약 ● 물질 : 물질 종류(재료 등), 수치 데이터(반응/제조 조건, 중량비 등), 화화식 등 요약 ● 방법 : 공정 단위별 요약 ● 용도 : 약리 효과 등	
도면	특허기술 이해 도면	특허청구범위 구성 요소 도면

출원년도	출원/등록번호	출원인	목적	해결수단	발명 구성요소	기타-기술요소

2. 핵심특허 요지분석

예시

[고전압/수소 안정성 기술의 권리범위 비교분석]

기술 분야				
번호	분류	공개(등록)번호	출원일	출원인
1	고전압/수소 안정성	US5,641,031	1995.04.12	Daimler-Chrysler

[목적 및 효과] 본 발명은 서로 이격되어 배치된 두 개의 세로빔(beam) 사이에서, 차량의 바닥밑 영역에 연료전지를 배치함으로써, 세로 및 가로방향 모두에서 연료전지가 사고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기술 구성 요약]
차량내 구동수단장치에 있어서,
1) 상기 구동수단은 적어도 하나의 전기 견인(traction) 모터, 상기 견인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연결된 연료 전지, 및 상기 연료전지에 연결된 연료탱크로 구성되고, 상기 연료전지는 상기 차량의 휠(wheel) 사이의 일정 위치에서 차량 바닥용 지지구조상에 장착되고,
여기서:
2) 상기 지지구조는 서로 이격되어 배치되어 상기 차량 바닥 밑에 장착되는 두 개의 세로빔(beam)과 서로 이격되어 배치되고 차량의 이등거리에 형성하여 상기 세로빔 사이에서 연장되는 두 개의 가로빔으로 구성되고;
3) 그리고, 상기 연료전지는 상기 세로 및 가로빔에 의해 규정된 안전한 영역에서, 상기 세로빔 사이에서 차량의 바닥밑 영역에 장착 되고;
4) 상기 구조는 복수개의 상기 연료전지용 부속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부속수단은 상기 가로빔 사이에서 상기 세로빔 외부로 상기 바닥밑 영역에 장착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차량내 구동수단장치.

[주요 청구항 element 분석]
청구 1항
A. 구동수단 - 견인모터, 연료전지, 연료탱크, 휠
B. 지지구조 - 세로빔, 가로빔
C. 연료전지 위치 - 세로빔 사이 바닥 밑
D. 부속수단 위치 - 가로빔 사이 바닥 밑

대표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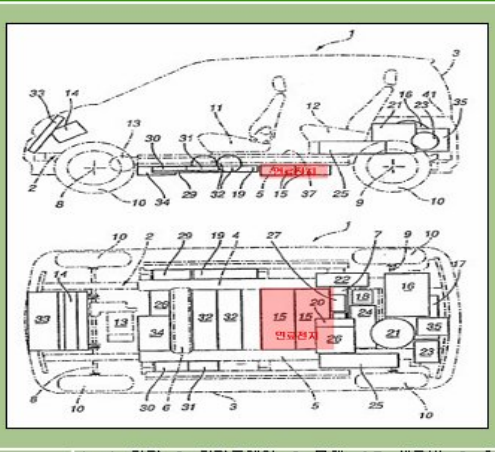

상세한 설명	1a-1: 차량, 2: 차량프레임, 3: 몸체, 4,5: 세로빔, 9: 후면축, 10: 휠, 12: 후면 벤치(bench) 시트(seat), 14: 전류제어기, 15: 연료전지스택, 16: 리포머(reformer), 19: 증발기, 21: CO 산화제, 23: 압축기, 25: 이온교환기, 29: 급수펌프, 30: 리포메이트(reformate) 컨덴서, 31: 리포머 열교환기, 32: 임시 수소저장소, 33: 연료전지 방열기, 34: 전류제어기, 35: 모이스트너(moistener)
출원일자	1995.04.12
공개(등록)번호	US5641031
비고	세로로 및 가로방향 모두에서 연료전지가 사고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함.

출처 : 특허청(2006),「연료전지 자동차 분야 특허동향」

3. 핵심특허 유사도 분석

공개번호	[JP]200X-123456	[JP]200X-XXXXXX
출원일자	200X.X.XX	200X.X.XX
대표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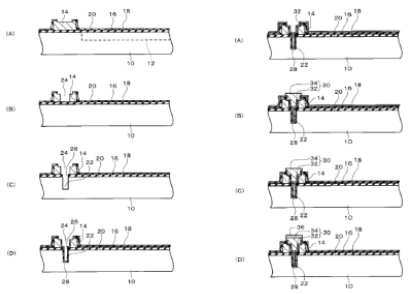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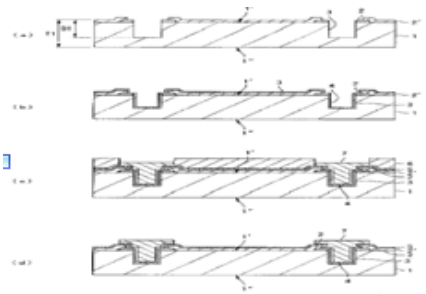
구성요소 [청구항1]	A : 凹부 B : 도전부 설치 C : 도전부를 노출 D : **신생면 노출 때까지 연삭 또는 연마**	A : 凹부를 바깥방향으로 확대된 개구 B : 도전부 설치 C : 도전부 노출 d : **스핀에칭**
	A + B + C + D	A + B + C + d
기타 관련특허	KP19XX-0123456, USXXXX, USXXX, KP200X-1234567	
검토의견	A, B, C의 구성 요소는 동일하나 박형화의 방법이 서로 다름 (D와 d)	

4. 특허침해의 의미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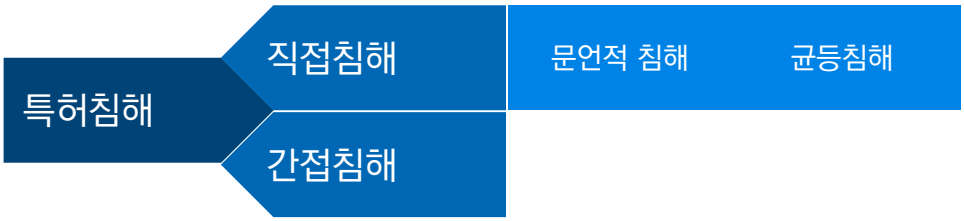

1) 특허침해 정의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범위의 발명을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 국가 내에서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직접침해 :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 간접침해 : 직접적인 침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침해의 예비 단계로서 그대로 방치하면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 행위

2)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청구범위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위한 일반 원칙으로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출원경과참작의 원칙이 있다.

3)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위한 원칙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판단이 애매한 경우, 특허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하여 보호범위를 판단한다.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보다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특허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표시한 의사 및 특허청이 표시한 견해를 참작하여 보호범위를 판단한다.

4) 직접침해의 판단

- 직접침해의 의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 자체와 침해 대상물을 비교하였을 때, 침해 대상물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문언적 침해와 균등 침해로 구분할 수 있다.

- 문언적 침해의 판단

  구성요건 완비의 법칙(All Element Rule)

  특허청구범위에서 발명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를 구성요소(element)라고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특허침해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구성요건 완비의 법칙'이라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와 동일한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를 '문언적 침해'로 구분한다.

  이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거나,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로 가지고 있는 경우 침해가 성립되나, 특허발명의 구성요건 중 일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 균등침해의 판단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

  '균등론'이란 침해대상물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구성요소 중 일부가 균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이론이다. 많은 침해자가 발명의 비교적 경미한 구성을 변형하여 침해를 회피하고자 하는 반면, 특허권자가 모든 형태의 변형 실시예를 예측하여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론이다. 또한 균등론에 따라 특허발명과 균등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허권의 침해를 이루는 경우를 '균등침해'로 구분한다.

균등론의 적용 요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변형(치환)하여 실시하더라도 i)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ii) 치환된 요소가 특허발명의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며, iii) 그러한 치환이 당업자에게 자명하면 균등론이 적용된다. 단, 확인대상발명이 출원 시 공지기술인 경우와 치환된 요소가 특허권자가 의식적으로 제외한 사항이라면 균등론의 적용이 배제된다.

5) 간접침해의 판단

- 간접침해의 의미

현재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대로 방치하면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 행위, 예컨대 특허발명의 구성부품만을 업으로서 판매하면서 개인이 최종 조립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권자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이 특허발명 자체의 실시(직접침해)는 아니라도 직접침해의 전단계로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행위를 간접침해라 한다.

- 간접침해의 요건

① 물건발명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청약하는 경우에 물건발명에 대한 간접침해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엔진에 특허가 있는 경우, 그 엔진에만 사용하는 피스톤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청약하는 행위 등이다.

② 방법발명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청약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조성물을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기판을 세정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가 있고, A라는 조성물이 다른 용도가 없고 기판 세정에만 사용되는 경우, A를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청약하는 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직접 침해]

특허침해의 유형	특허발명	침해발명	침해 성립 여부 (판례)
문헌 침해	A+B+C	A+B+C	**직접침해 인정**
균등 침해	A+B+C	A+B+C’	**직접침해 인정**
이용 침해	A+B+C	A+B+C+D A+B+C’+D	**직접침해 인정**
생략 침해	A+B+C	A+B	직접침해인정 부정적 경향
불완전 이용침해	A+B+C	A+B+D	직접침해인정 부정적 경향
선택 침해	A+B+C	a+B+C	직접침해인정 부정적 경향
우회 침해	A+B+C	A+B+B’+C	**직접침해 인정**

[간접 침해]

선원 특허권자 발명 (갑)	후원 특허권자 발명 (을)	전용품/ 3자 실시발명	간접침해 성립여부
A+B		A (전용품)	**갑**에 **간접침해**
A+B	A+B+**C** (이용관계)	1) 전용품 A 실시 2) 전용품 C 실시	**1)갑**에 **간접침해 을**에는 **간접침해X** **2)갑과 을에 간접침해** 성립
A+B	C (갑에 전용품)	C 실시	**갑**에 **간접침해 을**에 **직접침해**

[특허침해 사례 비교]

	PATENT	INFRINGEMENT : equivalent	NON-INFRI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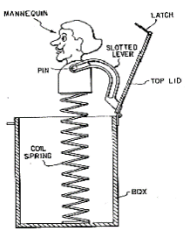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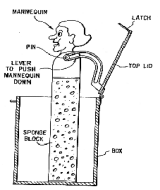 <u>A coil spring is not a sponge block</u> and there would thus be <u>no literal infringement</u>. The sponge block does the same thing in the jack-in-the-box as the coil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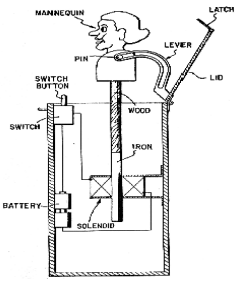
청구범위	An amusement device for children including	CONDITION	TEST	TEST
	a) a box giving a hinged top lid, the lid having a latch, b) a coil spring	1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	Performs substantially <u>the same function</u>	**Yes**, The rod-switch-solenoid components force the mannequin up from the bottom of the box to a position above the box
	c) a mannequin mounted on the top of the coil spring, the coil spring mounted on the bottom of the box, d) a slotted lever, the slot receiving a pin carried by the mannequin, the lever at one end thereof rigidly attached to the inside of the box lid,	2 Substantially the same way?	In substantially <u>the same way</u>	**No**, The rod-switch components do not convert the force required to close the box against the spring into stored energy. When the lid is closed, there is no force urging the mannequin upwardly.
	e) Whereby when the lid is closed the lever will push the mannequin down into the box, the energy required to close the lid being stored in the coil spring to push up the mannequin when the latch is released.	3 Substantially the same result?	To produce substantially <u>the same result</u>	**Yes**, When the lid is unlatched the mannequin pops up.

5. 특허권 침해 판단

1) 상표권 침해

- 침해의 의의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법률상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침해 요건

  ① 정당한 권원 없는 타인이 ② 등록된 상표와 ③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③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④ 출처표시로서 사용하되, ⑤ 그와 같은 사용이 상표권효력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판단된다.

2) 디자인권 침해

- 침해의 의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침해 요건

  ①정당한 권원 없는 타인이 ②등록된 디자인과 ③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③산업적 수요에 응하여 계속적으로 영위할 의사로 ④디자인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로 판단된다.

예시

[공기방울 세탁기의 특허기술동향]

일본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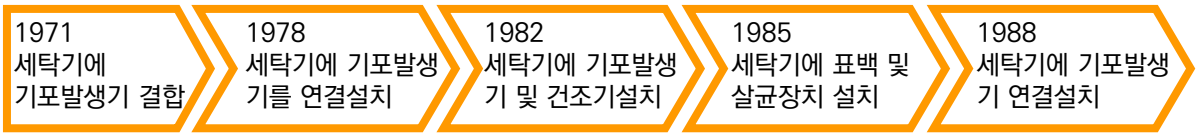

한국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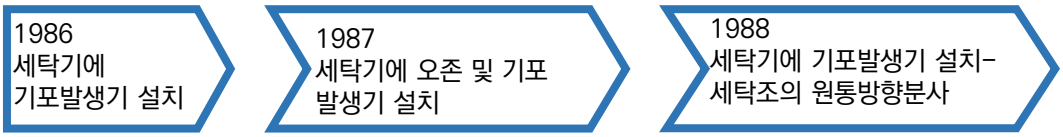

결론 : ① ②

- 기본 기능 : 물과 세제를 이용하여 세탁물을 세탁하는 전자제품
- 기본 요소 : 물 + 세제 + 전기(동력)
- 세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
- 물 없이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은 ?
- 세제를 이용하지 않고 세탁하는 방법은 ?
- 현재 세탁기의 문제점(불편사항)은?

예시

9. The system recited in claim 1, wherein the user interface enables selection of an action by causing the output device to display a pop-up menu of the linked actions.

출력 기기가 연결된 링크의 팝업 메뉴를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이용자 인터페이스가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1. A computer-based system for detecting structures in data and performing actions on detected structures, comprising : an input device for receiving data;
an output device for presenting the data;
a memory storing information including program routines including an analyzer server for detecting structures in the data, and for linking actions to the detected structures;
a user interface enabling the selection of a detected structure and a linked action; and
an action processor for performing the selected action linked to the selected structure; and
a processing unit coupled to the input device, the output device, and the memory for controlling the execution of the program routines.

▲데이터 수신을 위한 입력 기기
▲데이터 표출을 위한 출력 기기
▲**프로그램 루틴을 포함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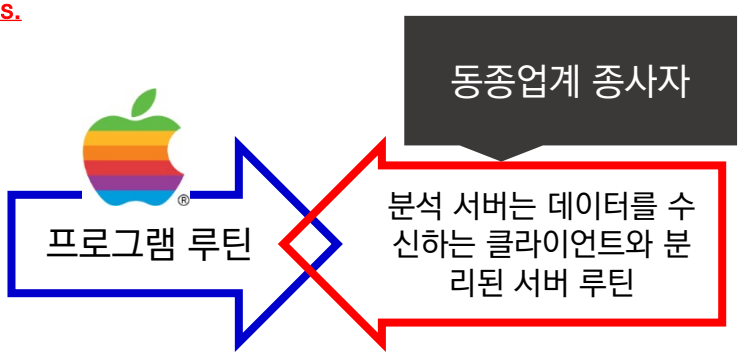

메모리의 별도 공간에 저장돼 있다는 점만으로는 분리된 분석 서버로 보기엔 불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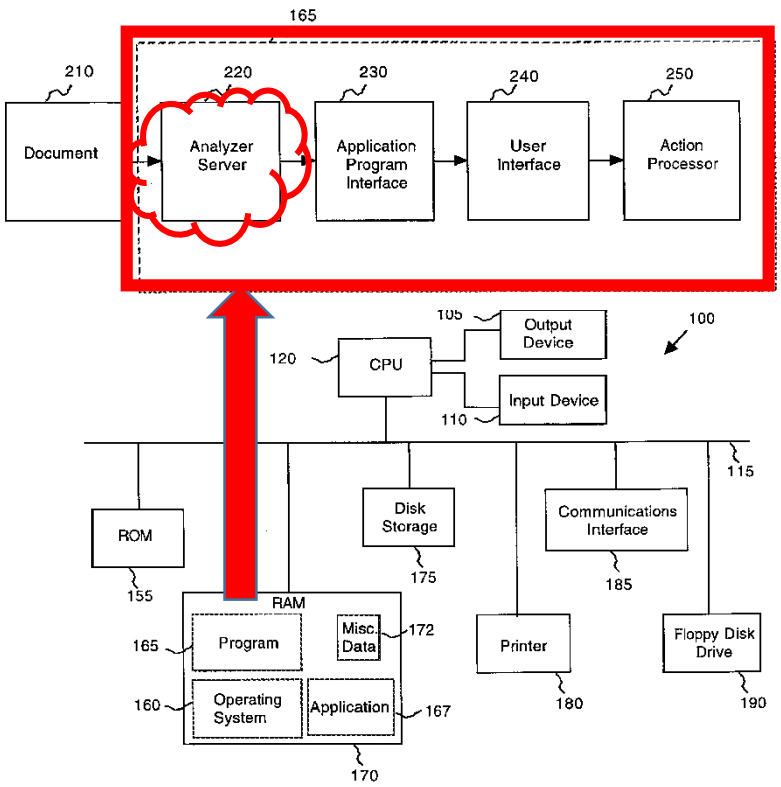

예시

명칭	• 저마찰계수와 향상된 수명을 가진 그리스로 윤활된 미끄럼 안내 부재
기술분야	• 본 발명은 윤활된 기계 요소들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발명은 미끄럼 마찰에 의해, 연속 또는 왕복 운동에서, **직선 또는 회전 안내 기능**을 제공하며, 윤활을 간소화하고 정비의 빈도를 줄이는 것에 관한 많은 산업영역의 관심사항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윤활된 기계 요소들에 관한 것이다.
장치 사용범위	• 슬라이드웨이/러너 타입, 축/베어링 타입, 볼/소켓 이음부 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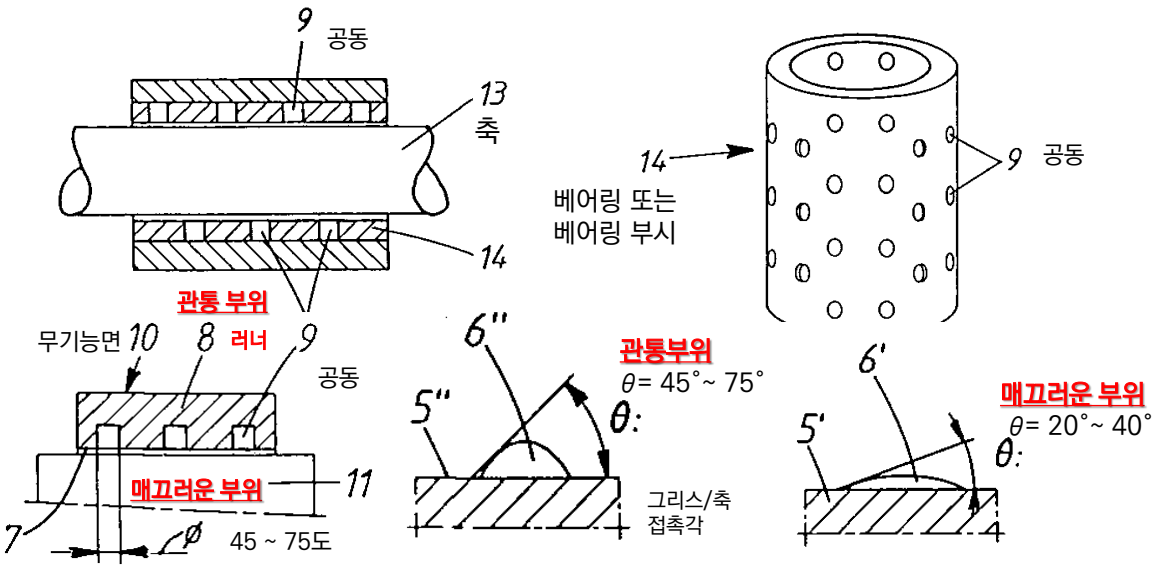

예시

청구항 1항

미끄럼 마찰에 의해 상호작용하도록 의도된 2 개의 부위로 이루어져 있는 기계 부재를 위한 안내 장치로서,
상기 2 개의 부위 중 하나는 매끄러운 부위(11)로 명명되고, 매끄럽게 작용하는, 즉 매끄럽게 마찰하는 면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관통된 부위(8)로 명명되고, 비누형 성분, 유류 성분 및 극-압력 첨가제를 포함하는 윤활 페이스트 형의 그리스를 수용하도록 의도된 노출 공동(9)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하는, 즉 마찰면(7)을 가지고 있는 상기 안내 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누형 성분과 상기 유류 성분간의 분리의 개시가 발생하는 온도보다 15℃±5℃ 낮은 측정온도로 명명된 온도에서 측정된, 상기 매끄러운 부위의 상기 기능면과 상기 그리스 사이의 접촉각(θ)이 20에서 40도 사이에 있고, 그리고 상기 측정온도에서 측정되었을 때 관통된 부위의 상기 기능면과 상기 그리스 사이의 상기 접촉각이 45에서 75도 사이에 있도록 상기 관통된 부위의 재료가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내 장치.**

청구항 19.
제 1 항 또는 제 15 항 또는 제 16 항에 있어서, **공동이 관통된 부위의 전체 표면에 걸쳐 규칙적으로 분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내 장치.**

청구항 30.
축이 매끄러운 부위고 베어링이 관통된 부위인 것에 특징되어지는 제 1 항 또는 제 15 항 또는 제 16 항에 따른 **축/베어링 장치.**

청구항 31.
슬라이드웨이가 매끄러운 부위고 러너가 관통된 부위인 것에 특징되어지는 제 1 항 또는 제 15 항 또는 제 16 항에 따른 **슬라이드웨이/러너 장치.**

청구항 32.
볼이 매끄러운 부위고 소켓이 관통된 부위인 것에 특징되어지는 제 1 항 또는 제 15 항 또는 제 16 항에 따른 **볼/소켓 장치.**

청구항 33.
제 30 항에 있어서, 베어링이 2 개의 기능면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베어링 장치.**

직선 또는 회전 안내 기능

안내 장치, 슬라이드웨이/러너 장치

볼/소켓 장치, 축/베어링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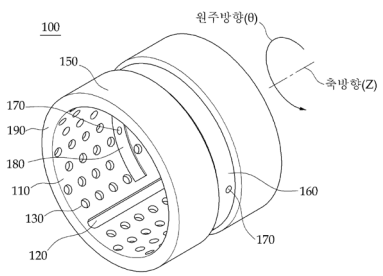

예시

[회피설계 사례]

- 전자회로에서 트랜지스터가 핵심 역할을 하지만 저항, 콘덴서, 다이오드 등 다른 전기 소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킬비는 ' 트랜지스터와 마찬가지로 이 전기소자들도 실리콘으로 제작하면?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1개의 실리콘 속에 모든 소자를 내장할 수 있을까?
- 킬비 특허 : USP 3,138,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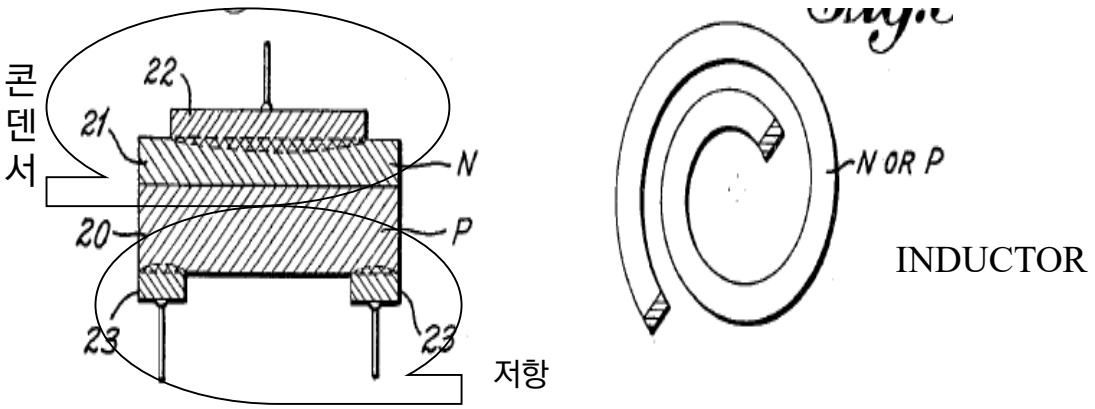

출처 : 박진준(2003.3.),「발명컬럼 10호」

6. 유망아이템의 정선과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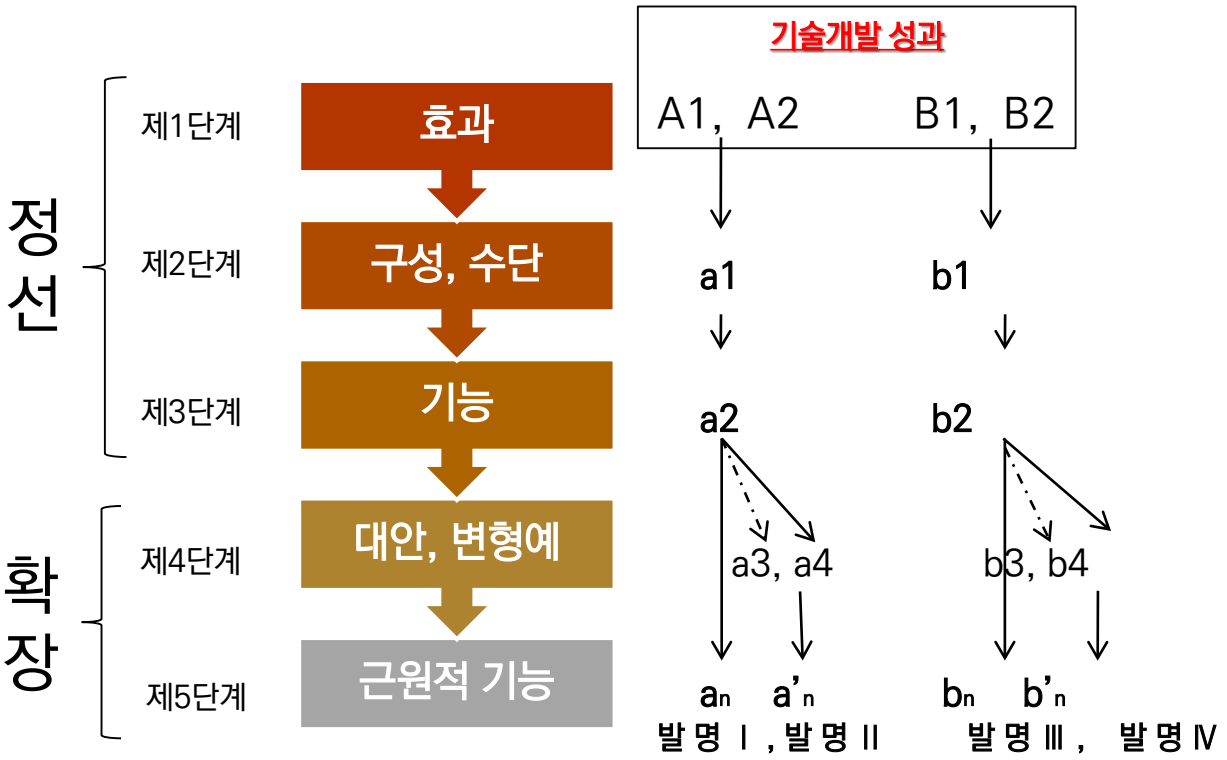

실습

[기술차별성 분석 평가]

세부기술	선행기술	선행특허	선행제품	차별성 평가	보유기술
요소기술 A	●	●	●		완전확보
요소기술 B	X	X	▲	차별성	부분적확보
요소기술 C	X	X	X	차별성	부분적확보
요소기술 D	●	X	●		미확보
요소기술 E	●	▲	▲		완전확보
요소기술 F	X	●	X	차별성	미확보
요소기술 G	▲	X	●		부분적확보

- 선행 기술/특허/제품과의 요소기술이 없는 경우
- 선행 기술/특허/제품과의 요소기술의 유사성이 있지만, 기술 구현 수단이 상이할 경우
- 차별성이 있는 기술이 핵심요소기술일 가능성도 높음
- 차별성이 없지만 핵심요소기술일수도 있음
- 부분적 확보 혹은 미확보 요소기술은 기술개발계획에서 확보방안 수립이 필요함

7. 특허 권리 취득 전략

1) 조속한 출원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의 활용

연구 결과의 발표일자가 특허출원 시점보다 앞서는 경우, 각 나라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미 공지된 발명이라도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의제하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되도록 특허출원 이전에는 발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가 스스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또는 기술을 개발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개된 경우,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6월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해당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의제한다.

3) 국내우선권 제도의 활용

우리나라의 최초 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우리나라에 제2의 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요건 등의 판단시점이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인 발명을 먼저 출원한 후 이에 대한 개량 발명을 다시 출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와 조합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4)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의 활용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는 출원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실용신안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특허청구범위의 제출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 출원 명세서의 형식과 언어의 제한을 없앤 특허법 개정안이 2012년 시행 예정

* 미국의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제도

5) 심사청구 제도의 활용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으로부터 5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 획득이 필요한 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의 적절한 시기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특허권의 취득 및 유지에 있어서 중요하다. 특허의 취득이 불필요해지는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유행하는 기술에 맞추어 청구범위를 보정한 후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권리 행사가 용이한 방향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다.

↕

이와는 반대로 특허권을 조기에 획득하여야 할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활용

6) 출원 공개제도의 활용

공개된 출원발명은 공개일 이후에 출원되는 동일·유사한 발명에 대하여 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자사가 독점권을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타사가 이에 대하여 특허 등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없이 발명 내용의 공개만을 유도할 수 있다.

* 특허공보

* 특허조기공개제도

* 특허청에서는 '사이버공지'를 위한 '공지자료실'을 운영

[R&BD사업과 특허창출 전략 예시]

대분류	IPR 및 R&D 전략
A 기술	• A - A 기술 : 완전 회피 가능 – 회피기술 1 설명 : ~ ~ ~ ~ ~ (중점연구개발 방향 중심) ~ • A - B 기술 : 완전 회피 가능 – 회피기술 1 설명 : ~ ~ ~ ~ (중점연구개발 방향 중심)~ ~ – 회피기술 2 설명 : ~ ~ ~ ~ (중점연구개발 방향 중심) ~ ~
B 기술	• B – B 기술 : 완전 회피 가능 – 회피기술 1 설명 : ~ ~ ~ ~ ~ ~ ~ ~ ~ ~ ~ ~
C 기술	• XX 과제와 연계한 유효 특허의 도출이 요망됨 • 실용화 시 T사의 기본특허에 대한 License필요 (기본특허 번호 : USX,XXX,XXX - - -)
D 기술	
F 기술	

참고문헌

중소기업청, R&D기획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지식재산권의 이해」

POSTECH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3767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효자동 산31)
TEL. 054-279-0114
E-Mail. webmaster@postech.ac.kr